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에 관한 세미나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 우리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일 시 : 1993년 10월 14일(14:00-17:30)

장 소 : 통일원 회의실(417호)

통 일 원

이 자료는 우리원이 남북경협 본격화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3. 10. 14 내부적으로 개최한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에 관한 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인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남북경협 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진행시간표

- ◇ 개회인사 : 14:00-14:10
- ◇ 소주제 I 주제발표 및 토론 : 14:10-15:40
 - 발표 :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배종렬(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연구위원)
허 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허 병(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부장)
- ◇ 휴식 및 음료 : 15:40-15:50
- ◇ 소주제 II 주제발표 및 토론 : 15:50-17:30
 - 발표 : 허 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사회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배종렬(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연구위원)
제성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허 병(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부장)
- ◇ 발제 및 토론자 만찬 : 18:00-19:30

목 차

세미나 진행 시간표

소주제 I : 북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1
- 대북투자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	
I. 서 론	3
II. 외자유치 관련 법령 제정의 배경	5
III. 외자유치 법령의 내용 및 문제점 분석	9
IV. 외자유치 관련 법령과 대북투자 보호 방향	51
V. 종합적 평가	60
VI. 결론	68
소주제 II : 북한 법제상으로 본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가능성	77
I. 머리말	79
II.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80
III. 북한, 중국,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제도 비교	86
IV. 결론 및 경제교류 가능성	94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 대북투자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 성 호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분석 및 평가

— 대북투자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

제 성 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I. 서 론	IV. 외자유치관련 법령과 대북투자 보호방향
II. 외자유치 관련 법령 제정의 배경	V. 종합적 평가
III. 외자유치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문제점 분석	VI. 결 론

I. 序 論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決定으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및 「外國人企業法」 등 3개 法을 제정·공표하고 동년 10월 16일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한 데 이어, 다시 1993년 1월 31일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3개 법령을 채택하는 등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한 法令整備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¹⁾ 이와 같이 북한이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을 비롯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을 새로이 제정한 것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

1) 北韓 官營 中央通信이 6일 보도 ; “북한 : 중국보다 세울 낮춰 투자손짓,”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 2면.

gramme : UNDP)이 추진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TRADP)에 초점을 맞추어 1991년 12월 28일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합영법만으로는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法制的인 次元에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法令整備過程의 일환으로 평가된다.²⁾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난 해 10월에 제정된 外國人投資法을 基本法으로 하여, 關聯 附屬法으로서 合營法(1984.9.8), 合營會社所得稅法, 外國人所得稅法(1985. 3.7),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8개 법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合營法施行細則(1985. 3. 20, 1992. 10.16 개정), 合營會社所得稅法 施行細則, 外國人所得稅法 施行細則(1985. 5.17) 등 3개의 細則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³⁾ 이로써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은 合營法 등 既制定되어 적용되고 있는 법령과 신설된 법령을 포함,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法制度的 基盤이 일단 갖추어졌으나, 앞으로도 근간에 제정된 법들의 後續措置로서 각각의 세칙 제정과 더불어 稅關法, 保險法, 會社法, 商標法, 產業財產權 保護法令, 土地賃貸借法, 會計法, 銀行法, 環境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南北交流協力, 특히 物資交易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북한의 核武器擴散防止條約(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脫退 등으로 인한 南北關係 경색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되면 물자교역량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對北投資 등 南北間 協力事業의 경우 북한의 전반적 사업수준, 내

2) “경제개방 가속화하는 북한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정의미,」 「서울신문」, 1993년 2월 12일 6면.

3) 內外通信, “외국투자 유치위한 법령정비 가속화, ” 「內外通信」 제834호 (1993.2.11), pp.A1~A2.

수시장의 성숙 정도, 사회간접자본 등 북한내부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북한기업과의 合營, 合作 등 對北 直接投資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북한이 다른 海外投資地域에 비해 거리가 가깝고 일본이나 대만기업과의 競爭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이며 南北韓 企業人間 意思疏通에도 별 지장이 없음을 감안할 때, 對北投資는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투자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대북투자 본격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法令의 內容과 問題點에 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시 保護方案과 考慮事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분석함에 있어서 필자는 본고에서 1992년과 1993년에 제정된 6개 외자유치관련 법령과 기존의 합영법 및 동 시행세칙만을 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 外資誘致關聯 法令 制定의 背景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經濟支援과 住民消費 抑制를 통한 內部資源 動員의 極大化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 시작된 제1차 7개년계획은 中·蘇 理念紛爭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국가 지원 감소로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실패하였다.⁴⁾ 1969년 중·소간 국경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이들 양국에 대하여 等距離外交를 추진하던 북한에 대하여 이들 국가의 원조가 감소하게 되자, 중·소의 지원에 한계를 느낀 북한은 경제개발 6개년계획(1971~76)

4)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統一速報」, 제92-11호(1992), p.3.

에서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제1차 石油波動(oil shock) 및 북한의 주력수출상품(연, 아연 등 1차상품)의 국제가격의急落으로 外債累增만을 초래한 채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처럼 社會主義國家 經濟支援 減少 속에서 外債償還能力 喪失로 인한 서방차관의 도입 부진, 설비관리·운영능력 부족 등으로 경제개발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1984년 9월 외채상환의 부담없이 서방의 자본·기술을 유치하는 방도로서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가 외국 또는 해외동포의 회사 또는 기업소와 합영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1979년 제정)을 모델로 한 「合營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85년 3월 合營法施行細則,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外國人所得稅法을, 그리고 1985년 5월 合營會社所得稅法 細則 및 外國人所得稅法 細則을 제정하였다. 1986년 8월에는 「朝鮮國際合營總會社」를 설립하고, 1988년 12월 政務院內에 合營工業部를 新設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制度 마련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서방국가 및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89년에는 완전한 私有合營會社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⁵⁾

그러나 합영법 등 외자유치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政治·社會的 閉鎖性, 社會間接資本施設의 落後, 內需市場의 狹小, 外資誘致關聯 法·制度 未備 등으로 합영유치 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북한의 체제개혁이 병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投資環境은 서방기업가들로부터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일교포 회사와의 소액규모의 합영을 제외하면

5)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서울: 三星經濟研究所, 1992), pp.34~35 ; 崔周煥, 「北韓經濟論」(서울: 大旺社, 1992), p.202 ; 그러나 合營工業部는 1990년 10월 폐지되었다. 합영법은 對外經濟事業部가 외국기업과의 합영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합영법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합영사업은 合營工業總局이 담당하고 있고, 대외경제사업부는 최근 폐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2), p.244 ; 동용승,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계 법규 정비의 배경 및 의미”, 「世界經濟」(三星經濟研究所), 제41호(1992.10.25), p.48참조.

합營實績은 미미한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⁶⁾ 즉 북한의 信用度⁷⁾ 등 經濟的 投資環境이 열악한 데다가 外國人投資制度마저 미비하였기 때문에⁸⁾ 1991년말 현재 朝總聯系 在日 商工人들이 주류(68건)을 이루는 100여건의 合營계약만이 체결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1억 5천만달러 정도에 불과하였다.⁹⁾

1989년 이후 동구 및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체제 해체, 특히 대외무역의 50% 이상을 의존해 왔던 對蘇經濟關係의 崩壞로 인해 주요 해외시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무역규모도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었다. 1991년도 무역총액은 27.2억달러로 전년대비 57% 감소되었으며, 경제성장율은 -5.2%로 1990년(-3.7%)보다 더욱 침체되었다.¹⁰⁾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국제적 경제고립과 이로 인한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방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1991년부터 대외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를 통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自由經濟貿易地帶 設置 등 제한된 경제개방을 검토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 7월 중국 長春에서 열린 제1차 「東北亞經濟技術發展會議」(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라는 이름의 民間國際學術會議

6) 諸成鎬, “北韓 外國人投資法-5가지 문제점 : 羅津·先鋒地區 開發을 중심으로,” 「自由公論」, 통권 제311호(1993년 2월호), p.188.

7)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西方圈에 대한 對外債務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對外信用도가 극히 낮으며, 최근 국제은행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이라도 國際的 信用도는 最下位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북한은 調查對象 총 113개 국가중 우간다, 수단 다음으로 對外信用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Institutional investor*(March, 1992), p.120참조.

8) 中國이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오랜기간에 걸쳐 수많은 法令·條例를 제정 실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반면, 북한의 관련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合營법」, 「合營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및 각각 이들의 세칙을 포함, 모두 6개에 불과하였다.

9) 統一院 情報分析室, 「週間 北韓動向」, 제95호('92.10.18~10.24), p.8 ; 統一院 教育弘報局, *supra* note4, p.4.

10) 統一院, 「'92北韓概要」(서울 : 統一院, 1992), pp.224~230 참조.

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고, 1991년 7월부터 유엔개발계획이 관련하기 시작한 이른바 「豆滿江地域開發計劃」構想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¹¹⁾

북한은 동북부 지방에 최고·최대의 부동항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확충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항만을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두만강 인접지역에 조선산업,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을 유치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政務院 決定 제74호로 우수한 자연적 조건과 양호한 항만시설을 구비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는 對外經濟開放措置를 단행하였다.¹²⁾

그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기술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로써 합영·합작하는 동북아시아의 기업들에게 이 나진·선봉지역을 개방하는 한편, 투자우대조치 등 여러가지 유리한 투자조건을 제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특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

11)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관해서는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統一政勢分析 92-07(서울:民族統一研究院, 1992)참조.

12) “합북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는 北韓 中央通信의 1991년 12월 30일 보도. 內外通信, 제7641호, 1991.12.31참조; 이와 같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제적 동기 외에도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사회주의권에서의 개혁과 개방, 그로 인한 탈이념과 탈냉전 시대의 도래, 구소련의 몰락과 동구권의 대변혁 등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일련의 대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편 세계적인 대화해와 협력, 그리고 경제우선의 현실주의 등장 등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과 대두됨을 목격하면서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에 순응해야만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이 체제의 존립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체제유지수단의 일환으로서 대외적 경제개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대외적 개방의 표현으로서 북한은 개방의 물결이 유입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 輿地를 선택하였다. 그것이 북한의 동북부지역, 즉 나진·선봉지역이다; 현재는 나진·선봉지역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되어 있으나, 앞으로 해주, 남포, 신의주 등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19.

대 선포에 이어 法制度的인 投資與件 改善을 통해 남한 및 서방제국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등 3개의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동년 10월 16일 合營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른 後續措置로서 다시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3개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¹³⁾

Ⅲ. 外資誘致關聯 法令의 內容 및 問題點 分析

1. 法令體系

북한이 당면한 經濟難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合營법이 전부일 정도로 미비한 기존의 投資誘致制度로는 충분한 外資導入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근 북한은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을 정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의 체계 및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外國人投資法은 合營, 合資,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 투자 전반을 규율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基本法 내지 一般法의 성격을 갖는다. 合營法과 合作法, 外國人企業法은 각각 合營기업, 合資기업, 外國人기업의 설립·운영·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는 下位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合營과 관련하여 合營법

13) 諸成鎬, *supra* note 6, pp.184, 188 ; 이 외에도 북한 外國人投資關聯法令의 制定背景에 대해서는 오길남,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北韓」, 통권 제252호(1992년 12월), pp.22~31 ; 金淳培, “외국인투자법령의 제정,” 「統一」, 통권 제135호(1992년 12월), pp.60~62 ; 東勇승, *supra* note 5, pp.47~50 참조.

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外國人投資法이 新法(後法)으로서 優先的으로 適用되는 效果를 갖는다.¹⁴⁾ 한편 신설된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所得稅法은 稅制關聯 法令을 통합한 것으로서 기존의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동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동세칙과 모순 충돌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기존 법령들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의해 事實上 廢止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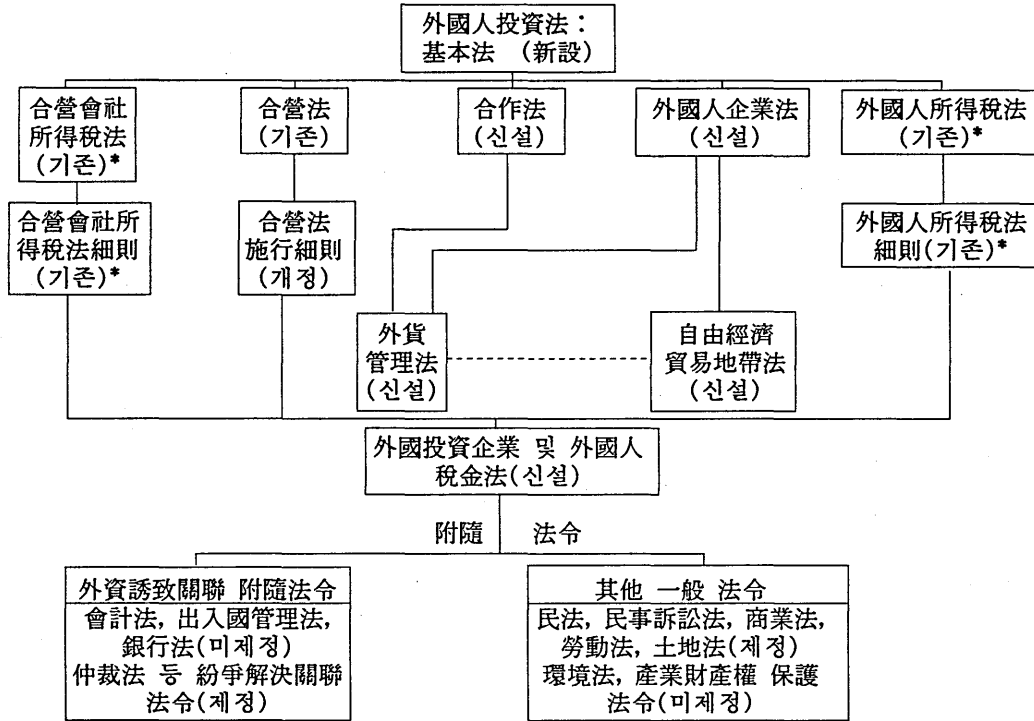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북한이 외자유치에 필요한 법령을 추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일단 外形上으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法制度的 基盤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만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이 완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앞으로도 최근 신설된 6개 법들의 後續措置로서 각각의 세칙 제정은 물론, 稅關法, 保險法, 會社法, 商標法, 產業財產權 保護法令, 土地賃貸借法, 會計法, 銀行法, 環境法, 觀光法 등 관련법령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 內 容

가. 外國人投資法

- 14) 統一院 教育弘報局, *supra* note 4, p.5 ; 全洪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北韓經濟研究센터 研究資料 93-05(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3.3), p.3 ; 유임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협력방안,” 「북한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제과제」(서울: 건국대학교 현대이념비교연구회, 1993.6), p.6 ; 內外通信,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 불구, 투자수용한계 드러내, 「內外通信」, 제818호(1992.10.22), p.A1.
- 15) *Ibid.*, p.25 ;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최근 6개 外國人投資關聯 法 制定을 中心으로-,” 「主要國際問題分析」(外交安保研究院, 1993.4.28), p.13 ; 다만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所得稅法에는 기존법령의 존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존속여부가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다. 개정 합영법 시행세칙 제85조에서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기존의 합영회사소득세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3호(1993.3), p.8 ; 諸成鎬,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26권 2호(1992), p.199.

〈표1〉 北韓의 外資誘致關聯 法令 現況圖



範例：*가 표시된 법령은 事實上 廢止된 것임.

外國人投資法 제1조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법의 제정목적은 기술하는 대신 북한외의 대외경제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합영법 제1조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 규정으로부터 立法目的을 間接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外國人投資法은 총 22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外國人投資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⁶⁾

16) 이하 外國人投資法을 비롯한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의 내용은 統一院 教育弘報局, *supra* note 4, pp.1~24 ; 김정환,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 分析”, 「北方通商情報」(대한무역진흥공사), 통권 제85호(1992년 11월), pp.1~9.

(1) 基本概念

外國人投資法上 外國投資企業이라 함은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合作企業은 양측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의 상환 또는 이윤배분을 행하는 기업이다. 이에 비해 合營企業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라 利潤을 分配하는 전형적인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이다. 그리고 外國人企業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경영하는 기업이다(제2조).¹⁷⁾

이상에서 북한은 과거 외국인투자 형태를 합영에 국한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외국인의 대북투자 형태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 형태를 合營(equity joint venture), 合作(contractual joint venture)외 外國人企業(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⁸⁾

(2) 投資地域 및 投資의 當事者

17) 合作企業과 外國人企業의 定義는 각각 합작법 제2조와 외국인기업법 제2조에서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18) 본래 서구에서 사용되는 合作 또는 合作投資(joint venture)라는 概念은 持分合作投資(equity joint venture)과 非持分 合作投資 또는 契約的 合作投資(contractual joint venture)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용되는 合作은 후자만을 의미하며, 전자를 의미하는 용어로써 合營이 별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합작개념은 서구의 그것보다 좁은 개념이다.

한편 北韓의 合作은 中國의 合作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차이점도 적지않다. 첫째, 중국은 中外合作經營企業이 중국의 法人이나 非法人으로 설립될 수 있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 합작기업은 북한법인으로만 설립되도록 되어 있어 북한식 합작이 중국식 합작보다 더 협소하다. 둘째, 北韓式 合作概念은 북한단독경영을 전제로 하는데 비해, 中國式 合作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經營 및 意思決定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북한식 합작의 경우 외국투자가는 非常設的인 共同協議機構를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北韓式 合作의 경우 외국투자가는 契約에 따른 利益을 分配받는 대신,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투자자측의 契約不履行에 따른 損失을 제외하고는 합작기업의 經營失敗에 따른 합작기업의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은 부담하지 않는다. 金容浩, *supra* note 15, p.15참조.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은 북한 全地域에 설립할 수 있으나 外國人企業은 自由經濟貿易地帶 안에서만 창설·운영할 수 있다(제3조). 중국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지역에 대한 制限規定이 없는데, 북한이 이처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을 특정지역에 국한시킨 것은 經濟開放이 가져올 否定的的影響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외국의 기관·회사·기업체·개인 및 기타의 경제조직은 물론 ‘共和國 領域 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들도 투자가 가능하다(제5조).¹⁹⁾

(3) 投資對象 및 獎勵部門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이 投資對象에 해당된다(제6조).²⁰⁾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특히 장려된다(제7조). 이 장려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所得稅를 비롯한 각종 稅金의 減免, 有利한 土地使用條件의 保障, 銀行貸付提供 등 優待措置가 인정된다(제8조).

(4) 自由經濟貿易地帶에 대한 投資優待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 特惠的 經營活動條件을 보장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特惠라 함은 ① 특별히 정한 품목을 제외한 수출입 물자에 대한 관세 면제, ②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 면제, ③ 그 다음 2년간

19) 이와 동일한 내용은 합작법 제5조와 외국인기업법 제6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20) 합영법 제2조는 투자대상에 관해서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은 투자대상의 例示와 관련하여 農業, 遞信을 추가한 것이 되어 形式的인 見地에서 볼 때 합영법에 비하여 투자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영법에서도 기타 여러분야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양자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된다.

지 소득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 ④ 결산이윤의 14%로 소득세를 인하(여타 지역의 경우 25%) 등을 말한다(제9조). 이 외에도 북한은 “동 지대내에서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고 하여 出入國節次의 簡素化를 예정하고 있다(제10조).²¹⁾

(5) 投資手段

외국투자가는 화폐, 현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등 재산과 재산권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치는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평가한다(제12조). 이에 비하여 중국은 제3자에게 투자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土地使用 및 勞務管理

북한은 外國人投資法에 의거,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게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賃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1문). 합영법에서는 토지형태로 출자할 수 있고 합영회사가 국가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합영법 제21조 2문), 이 법에서는 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해 주고, 임대기간 중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讓渡 또는 相續을 인정하고 있다(제15조 2문). 이처럼 土地賃借의 期間을 「50년까지로」 보장한 것은 중국의 천진공단, 러시아의 나호트카 경제특구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계약상 정해진 관리원,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北韓人의 僱傭 및 解雇는 해당 노동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6조).²²⁾

21) 自由經濟貿易地帶法 제41조 참조.

22) 중국의 경우 직접僱傭이 가능하다.

(7) 外國人投資에 대한 保護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의 투자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補償을 한다(제19조). 과거 합병법에서는 국유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결과 북한당국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배상 없이 몰수가 가능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유화를 금지한 것은 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한편 이 법은 북한의 외화관리 법규에 따라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國外로 送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8) 紛爭解決

意見相異²³⁾ 發生時 1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北韓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紛爭事件을 심의·해결하거나 쌍방 합의에 따라 제3국 仲裁機關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제22조).

외국인투자법의 내용을 요약·도표화하면 <표2>와 같다.

<표2> 外國人投資法

구 분	내 용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류	•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외국투자자	• 외국기관, 회사, 기업체,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 •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동포

23) 북한은 '意見相異'와 '紛爭事件'을 구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아마도 意見相異는 意見의 不一致, 意見對立 또는 意見差異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正式의 紛爭으로 公式化·顯在化되기 이전의 潛在的 紛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분쟁의 개념을 法律的, 특히 國際法的으로 이해하지 않고, 通商의 概念의 紛爭(顯在的 紛爭 및 潛在的 紛爭 공히 포함) 中에서 顯在化되기 이전의 분쟁만을 意見相異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一般 國際法上 「紛爭」(dispute)이라 함은 '양자간의 어떤 法的 問題 또는 事實問題에 관한 意見의 不一致, 즉 法的 見解 또는 利害의 衝突'을 말한다. 1924년 常設國際司法裁判所(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Case에 대한 判決 참조.

구 분	내 용
투자대상분야	• 공업, 농업, 조선, 운수, 채신, 과학, 기술, 관광, 유통, 금융등
투자장려분야 우대조치	• 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 보장 •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기업 우대조치	• 수출입 물자에 대한 관세 면제(별도품목 제외) • 이윤발생년도부터 3년간 소득세 면제 및 그다음 2년간 50%내에서 감면 • 소득세율 14%(합영법 25%)
이윤재투자시 우대조치	•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출자대상	• 화폐, 현물, 공업소유권등 기술, 재산과 재산권
지사 등의 설치	• 국내외지사, 대표부, 출장소 설치, 자회사 설립허용
토지임대	• 최장 50년간 임대
인력채용 및 해고	• 북한노동력 채용을 원칙으로 함 • 해당노동기관과 계약에 따라 채용 및 해고 • 관리인원 및 특수직종 종사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를 외국인 채용 가능
국유화 및 수용금지	• 외국투자재산의 국유화 및 수용금지 •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시 해당 보상
과실송금보장	• 합법적 이윤, 수입, 청산후 잔여금액은 외화관련법규에 따라 국외송금 가능
비밀보장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은 법적으로 보장
분쟁해결	•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제3국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

〈出處〉 김정환,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 分析,” 「北方通常情報」(대한무역진흥공사), 통권 제85호(1992년 11월), p.4.

나. 合作法

合作法은 북한과 외국간에 經濟協力과 技術交流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合作法은 外國人投資法의 下位法에 해당한다. 合作法은 총 2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合作의 對象

합작의 대상은 수출품 생산 및 선진기술이 도입된 공업부문을 기본으로 하며, 관광·봉사(서비스)부문도 가능하다(제3조). 북한은 특히 현대적 설비 및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제4조).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할 수 있다(제5조).

(2) 合作企業 設立節次 및 運營

합작을 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協議하고 외국투자와 合作契約을 締結한 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合作申請書를 제출해야 한다(제6조 1문).²⁴⁾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承認 또는 否決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제7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 소재지의 道·直轄市 「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제8조 1문).²⁵⁾ 契約에 따라 외국투자가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政務院 對外經濟機關과의 合意下에 제3국의 기술자 채용도 가능하다(제11조). 또한 국가의 승인하에 생산·경영에 필요한 물자수입 및 생산 제품의 수출도 가능하다(제12조).

(3) 投資에 대한 利潤, 償還, 送金

24) 이 때 申請書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하여 필요한 關聯文件을 첨부해야 한다(제6조 2문).

25) 登錄한 날이 합작기업의 創設日로 된다(제8조 2문).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雙方의 合意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제13조).²⁶⁾ 이것은 북한에 합작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가 합작생산한 제품의 販賣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生産된 製品과 賣上收入은 合作契約에 따라 償還 또는 分配義務를 이행하는 데 優先的으로 사용한다(제14조). 외국투자자는 합작기업에서 얻은 合法的 利潤, 기타 수입을 북한 외화관리 법규에 따라 國外로 送金할 수 있다(제15조).

합작당사자들은 非常設的인 共同協議機構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 도입과 제품의 質 提高, 再投資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제16조).

(4) 決算 및 税金

合作企業은 經營활동에 대한 決算을 월별·분기별·연별로 하고, 규정에 따라 財政簿記決算書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財政銀行 機關의 監督을 받는다(제17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 데 따라 税金을 납부해야 한다(제18조).

(5) 合作企業의 終了, 清算 및 紛爭解決

合作은 合作期間이 滿了하면 終了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 滿了 또는 期限前 解散의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登錄取消

26) 북한의 합작기업은 모든 기업운영의 기초적 사항을 계약에 의해 정하는 매우 탄력적인 형태의 중국의 합작기업을 모방하였으나, 중국에 비해 북한측의 통제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합작기업은 북한법인으로 간주되며 경영을 북한측이 전담하고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합작기업은 중국내의 독립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영권 및 이윤분배 등은 계약에 따르므로 큰 제약은 가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윤분배방식에 있어서 제한이 없음은 북한의 경우와 중대한 차이라 할 수 있다.

手續(節次)을 밟아야 한다. 합작을 계속하려 할 경우,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제20조). 意見相異 發生時 1차적으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紛爭事件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제21조).

합작법의 내용을 요약·도표화하면 <표3>과 같다.

〈표3〉 合 作 法

구 분	내 용
합작기업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외국투자가가 공동 투자, 북한측이 생산과 경영 • 합작계약에 따라 외국투자가 투자몫 상환, 이윤분배
투자대상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이 기본 • 관광, 서비스부문도 가능
장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설비와 첨단기술 투자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 교포도 합작가능
설립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후 50일후에 승인여부 결정 • 승인후 30일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등록한 날이 합작기업 창설일)
투자상환 및 이윤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생산 제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
합작당사자 협의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설적인 공동 협의기구 조직

<출처>김정환,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 分析”, 「北方通常情報」(대한 무역진흥공사), 통권 제85호(1992년 11월), p.5.

다. 合營法 및 同 施行細則

합영법은 세계 여러나라들과 경제기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참조).²⁷⁾ 합영법은 外國人投資法보다 먼저 제정되었지

27) 합영법의 제정목적은 외국인투자법과 대동소이하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제1조는 법의 제

만, 외자유치를 包括적으로 規律하는 외국인투자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外國人投資法의 下位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合營法 및 1992년 10월 개정된 同 施行細則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合營의 基本

합영당사자는 原則적으로 북한의 기관·회사·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북한의 國家社會制度와 自主權을 尊重하는’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개인 및 경제조직으로 제한되나(법 제1조 2문, 시행세칙 제2조),²⁸⁾ 例外的으로 제일동포상공인을 포함한 ‘海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도 합영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 제5조, 시행세칙 제11조). 합영대상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 등이다(법 제2조, 시행세칙 제3조).²⁹⁾

(2) 合營會社의 組織

합영회사는 필요한 문건을 해당기관에 제출, 동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북한측 합영당사자가 외국측 합영당사자와 합영계약을 체결한 후 合營工業總局(합영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함으로써 설립된다(법 제6조,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9조 참조).³⁰⁾ 합작기업은 신청접수후

정목적이라기 보다는 勞動黨과 政府의 對外政策 表明이라고 할 것이나, 間接적으로 합영법의 제정목적은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北韓法制資料 제2호-法制資料 제160집 (서울: 法制處, 1992), p.17 참조: 이 외에도 합영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金辰,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 法規”, 「서울大學校 法學」, 제31권 1·2호(1990), pp.133~150 ; Woong Shik Shi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Korea Economic Weekly* September 23, 1991, p.23 등 참조.

- 28) 한편 개정 합영법 시행세칙 제1조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서기가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9) 이 열거는 網羅的 列舉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명 서비스업과 같이 이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합영대상에서 제외된다.
- 30) 합영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法人으로 된다(시행세칙 제13조 2문).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합영
공업총국은 합영회사 조직승인신청서 접수후 1月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여부
를 결정한다(시행세칙 제16조). 승인기간은 합영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
으나, 개정 합영세칙에서 개정·보완된 것이다.

합영회사에 대한 출자액과 지분은 當事者間 合意에 의한다(법 제7조 1문,
시행세칙 제26조). 합영당사자는 出資目的物로서 화폐,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토지 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법 제7조 2
문, 시행세칙 제27조 1문). 합영회사는 有限責任會社와 같은 法的 性格을 가
지며, 상대방의 同意를 받아 出資持分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讓渡할
수 있다(법 제8조, 시행세칙 제8조 및 제38조 1문 참조). 합영회사는 계약에
서 정한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을 줄일 수 없다(법 제9조, 시행세칙 제37조).³¹⁾

(3) 理事會와 經營活動

합영회사는 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두며(법 제10조, 시행세칙 제39조
1문), 議決方式은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
도, 회사기업의 증지 및 해산, 이사장·부이사장·이사·합영회사 사장·부사장·
재정검열원·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이사회에 參加한
이사 全員의 贊成으로 결정하며, 그 밖의 문제들은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시행세칙 제44조). 이처럼 북한식 합영은 투자비율과 상관없이 合議的
意思決定(만장일치 또는 3/2찬성)에 따른 공동의사결정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투자비율에 따라 經營權을 행사하는 資本主義式 合作投資(equi-
ty joint venture)와는 다르다.³²⁾

31) 자본의 減資制限과 관련, 북한의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의 경우 登錄資本의 減資가 불가
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식 합영의 경우 감자가 불가능하나 외자기업의 경우 減資
가 가능하다.

32)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
권 3호(1993.3.), p.15.

생산에 필요한 물자는 북한산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북한의 기관, 기업소는 합영회사의 물자구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시행세칙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 참조). 發明權, 技術文獻, 技術秘訣 및 북한에서 生産되지 않거나 購入할 수 없는 물자는 수입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51조 및 제52조 참조).³³⁾

합영회사가 상대측 당사자의 투자 몫으로 반입하는 물자와 회사경영용으로 수입하는 물자의 경우, 반입승인만 받으면 되고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때 반입한 물자에 대하여는 關稅를 부과하지 않는다(시행세칙 제59조). 생산된 제품은 輸出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산 물자의 購入이나 생산품의 북한내 販賣는 해당 무역기관 또는 다른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하며, 가격은 國際市場價格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법 제14조 1문, 시행세칙 제50조 및 제55조 참조). 합영회사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북한의 保險에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시행세칙 제63조).

(4) 勞務管理

합영회사 종업원의 雇傭 및 解雇는 북한의 法과 合營當事者의 契約에 따라 행하며(법 제16조), 실무적으로는 북한 勞動行政機關을 통해서 한다(시행세칙 제64조 1문).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는 북한 노동법규에 따른다(시행세칙 제68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은 북한의 해당 법규범과 규정에 따르는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 혜택을 받는다(시행세칙 제70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보수의 7%, 종업원은 노동보수의 1%를 각각 社會保險料로 납입하여야 한다(시행세칙 제71조). 합영회사는 회사안에 조직된 사회단체들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시행세칙 제73조).

33) 資材購入과 관련하여 국내구입이 불가능할 때 수입할 수 있다고 한 북한 합영법의 규정은, “합영회사가 국내조달과 해외조달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일 조건이면 국내구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 제57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5) 外貨管理 및 送金

합영회사는 북한 貿易銀行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다른 대외결제은행에 外貨計座와 「원」화 計座를 개설하고,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은 외화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법 제13조, 시행세칙 제74조). 經營計算은 북한 「원」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外貨로도 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78조 1문). 합영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이익배당금의 송금을 보장하되(법 제22조, 시행세칙 제79조 1문 참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액의 필요한 부분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80조).

(6) 決算과 配分

결산년도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다(시행세칙 제82조 1문). 決算은 연간 總收入에서 原價報償, 所得稅, 豫備基金,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자금(法定準備金) 등을 공제한 후 出資持分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하며(법 제18조, 시행세칙 제83조~제88조 참조), 합영회사는 豫備基金이 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매년 순소득중 5%씩 적립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시행세칙 제87조).

(7) 紛爭解決

모든 意見相異는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裁判機關 또는 貿易仲裁機關에서 審議·解決하며(법 제26조, 시행세칙 제98조), 재판은 북한의 民事訴訟節次에 따른다(시행세칙 제100조). 合營當事者는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법 제26조, 동 시행세칙 제102조).

기타 합영법 및 동 시행세칙의 내용을 요약·도표화하면 <표4>와 같다.

〈표4〉 합 영 법

구 분	주 요 내 용
당 사 자	공화국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개인(해외동포 포함)(합영법 제1조, 합영법 시행세칙 제2조, 제11조)
회사의 형태	유한책임회사(법 제8조, 세칙 제8조)
설 립	설립에 관한 계약체결→합영공업총국의 승인→도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법 제6조, 세칙 제12조, 제19조)
출자비용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름(법 제7조, 세칙 제26조)
출자형태	화폐,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토지사용권 등(법 제7조, 세칙 제27조)
이사회	최고의결기관(법 제10조, 세칙 제39조). 이사 수와 이사장, 부이사장은 계약에서 정함(세칙 제39조)
지분의 양도	상대방의 동의(법 제8조, 세칙 제38조)
종업원	외국인 채용가능(세칙 제66조). 북한인의 채용·해고는 노동행정기관을 통하여야 함(법 제16조, 세칙 제64조).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는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름(세칙 제68조).
과실송금	외국인은 임금액중 필요한 부분 송금가능(법 제22조, 세칙 제80조)
기 금	예비기금은 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순소득 가운데서 5%씩 적립(세칙 제87조). 기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 기금, 종업원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조성(법 제19조, 세칙 제88조).
보 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북한보험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함(세칙 제63조).
회사의 존속기간	계약에 의하되(법 제23조). 10년을 원칙으로 함(세칙 제90조) 기간의 연장은 6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합영공업총국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세칙 제61조)
외화관리	북한의 무역은행 또는 무역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구좌를 개설함이 원칙,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제3국 은행도 가능(법 제13조, 세칙 제74조)
결 산 및 분 배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기금이나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출자비용에 따라 배분(법 제18조, 세칙 제83조~86조)
해 산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법 제23조, 세칙 제91조). 일정한 경우 존속기간 전에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해산 가능(법 제24조, 제92조). 청산위원회 구성 및 청산인 임명(세칙 제94~96조)

구 분	주 요 내 용
분쟁해결	협의→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결. 쌍방합의시 제3국에서 분쟁 해결 가능(법 제26조, 세칙 제98조·제102조)

라. 外國人企業法

외국인기업법은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타국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는 法的根據 마련차원에서 제정되었다(제1조 참조). 이 법은 외국인기업법의 基本, 외국인기업의 創設, 외국인기업의 經營活動, 외국인기업의 解散과 紛爭解決 등 총 4장 3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外國人企業法の 基本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資本의 全部를 投資하여 창설하며 獨自的으로 經營活動을 하는 기업으로서(제2조), 북한은 외국의 법인과 개인들이 이를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 창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제1조). 투자대상분야는 전자, 자동차, 기계제작, 식료품가공, 피복가공 및 일용품 부문등의 工業과 운수, 봉사(서비스) 등이다. 다만 나라의 安全에 支障을 주거나 技術的으로 落後한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제3조).

국가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제4조).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제6조).

(2) 企業의 創設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은 외국인기업 創設申請書 接受日로부터 80일내에 承認 또는 否決을 決定하여야 한다(제8조). 기업창설 승인후 30일내에 기업소

재지의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하고, 그 후 20일내에 기업소재지의 財政機關에 稅務登錄을 해야 한다(제9조). 부득이한 事情으로 정한 기간내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投資期日을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2문).

(3) 經營活動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제품의 수출 및 북한내 판매가 가능하다(제16조). 북한의 원료·자재·설비의 구입이나 생산제품의 북한내 판매는 북한 무역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제17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의 노동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북한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이들을 해고할 수도 있다. 외국의 기술자·기능공의 채용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가 요구된다(제20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들은 職業同盟組織을 결성할 수 있고,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제21조 1문 및 3문).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合法的 利潤을 再投資할 수 있고, 관계법규에 따라 海外에 送金할 수도 있다(제22조).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경우 北韓의 保險에 가입해야 하며(제23조), 관련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제24조). 외국인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물자수입 또는 생산제품의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25조).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내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제26조 3문).

(4) 企業의 解散과 紛爭解決

외국인투자자는 공화국의 法과 規定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人民經濟發展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5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은 외국인기업법을 위반할 경우 그 情狀에 따라 기

업을 中止 또는 解散시키거나 罰金을 부과할 수 있다(제29조). 기업이 解散되거나 破産할 경우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申告해야 하며,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재산은 清算手續이 종료하기 전에 처리할 수 없다(제30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意見相異는 일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紛爭事件은 北韓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제31조).

외국인기업법의 내용을 요약·도표화하면 <표5>와 같다.

<표5> 外國人企業法

구 분	내 용
외국인기업의 정의	• 외국인투자가가 필요한 자본전액을 투자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
투자대상분야	• 전자, 자동차, 기계제작, 식품가공, 의류, 일용품, 운수, 서비스 및 기타 부문
투자자 및 허용 지역	•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 자유경제무역지대
설립절차	•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신청 • 신청서접수 80일안에 승인여부 결정 • 승인후 30일안에 기업소재지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등록 • 등록일로부터 20일안에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내국거래	• 원자재, 설비의 국내조달 및 생산제품의 국내판매는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 함.
은행구좌개설	• 북한 무역은행에 구좌개설 원칙
노동조합	• 종업원들의 직업동맹조직 보장
관 세	• 수출입에 대해 무관세 적용

<出處> 김정환,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 分析,” 「北方通常情報」(대한무역진흥공사), 통권 제85호(1992년 11월), p.6.

마.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

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참조). 이 법은 內容面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과는 달리 비교적 구체적이고, 외국투자자들에게 적용할 稅制를 하나로 묶어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북한영역내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諸般 稅金問題를 包括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한 一般法으로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의 基本, 所得稅(기업 및 개인), 財產稅, 相續稅, 去來稅, 地方稅, 이와 관련된 制裁 및 申訴請願(우리의 異議申請에 해당) 등 8개 장 57조 및 6개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이 법은 기존의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동 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동 세칙과 충돌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바, 이 법의 제정으로 북한은 後法優先의 原則에 따라 外資關聯 稅制에 관한 기존 법령, 즉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同 細則, 外國人所得稅法 및 同 細則 등이 이 법에 의해 ‘事實上 廢止’된 것으로 보인다.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⁵⁾

34)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및 外貨管理法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일원, 「月刊 북한動向」, 統分 93-3-23(서울: 통일원, 1993), pp.20~40참조.

35)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의 경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중국의 관련법규를 원용한 것으로 보이나, 中國과는 달리 외국투자자들에게 적용할 각종 稅制를 하나로 統合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稅制는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 「個人所得稅」, 「工商統一稅」, 「都市不動產稅」, 「車輛·船舶使用許容稅」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 한편 本稿에서는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同 細則, 外國人 所得稅法 및 同 細則 등에 관해서는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1)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의 基本

外國投資企業과 外國人의 稅金登錄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統合, 分離, 解散하는 경우 登錄한 날로부터 20일내에 해당 재정기관에 稅務登錄 變更, 取消 手續을 한다(제2조). 외국투자기업의 財政簿記 計算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른다. 재정부기 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다(제3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은 북한 「원」으로 계산하여, 受益者가 直接 納付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單位가 控除하여 납부한다(제4조). 북한의 關聯財政機關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稅金納付 定型에 대한 監督統制事業을 담당한다(제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本國政府와 北韓政府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 당해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제7조).

(2) 企業所得稅

外國投資企業은 북한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 및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북한영역 밖의 支社, 出張所, 子會社 등에서 얻은 소득도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제8조).

外國投資企業의 所得稅率은 原則的으로 決算利潤의 25%이지만,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14%,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 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 소득세율은 10%이다(제12조). 한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의 20% 세율을 적용

하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10%세율을 적용한다(제13조). 한편 자유경제 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 6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 건설부문 투자의 경우, 이윤발생시부터 4년간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의 경우 一般地域에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決算利潤의 25%로 하고 自由經濟貿易地帶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이 一般地域에서의 소득세율을 30%로 하고 經濟特區 또는 開放區에서는 15%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각각 1~5%낮게 책정된 것이다. 북한이 이와 같이 企業所得稅率을 중국에 비해 낮게 책정한 것은 유엔개발계획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과 관련하여 外資誘致面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을 의식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데서 비롯한 조치라고 판단된다.³⁶⁾

投資獎勵部門과 自由經濟貿易地帶의 生産部門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 간 免除하고, 그 다음 2년 간은 50% 범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제15조 2항). 제12조와 제15조 2항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투자장려부문(경영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4~5년차에는 기업소득의 5%의 세율, 그리고 장려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생산부문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경영기간 10년 이상)은 7%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게 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部門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所得稅免除 및 減免과 自由經濟貿易地帶의 下部構造 建設部門에 참여한 외국투자기업의 所得稅免除 및 減免이 인정되며(제15조 3항 및 4항), 외국투자기업이 利潤을 再投資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투자분에 대한 納付所得稅額의 50%를 返還받을 수 있고,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분에

36) Supra note 3, p. 42 ;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 2면.

대한 납부 소득세액의 全額을 반환받을 수 있다(제16조).

(3) 個人所得稅

北韓 領域 內에서 所得을 얻은 外國人은 個人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北韓 領域 內에서 1년 이상 滯留하거나 居住하는 外國人’은 北韓 領域 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個人소득세를 바쳐야 한다(제17조).³⁷⁾ 이처럼 個人소득세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자와 체류자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中國보다 嚴格한 徵稅를 의도하고 있다. 中國의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外國所得中 中國으로 送金된 부분에 대해서만 課稅對象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個人所得稅 課稅對象은 ①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② 배당소득, ③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④ 이자소득, ⑤ 임대소득, ⑥ 재산판매소득, ⑦ 증여소득, ⑧ 개인기업소득 등이다(제18조).

個人所得稅率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보수액이 월 2천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배당 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 등은 20%,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은 25%세율이 각각 적용된다(제19조).

(4) 財產稅

外國人은 북한에 가지고 있는 建物과 船舶, 飛行機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自由經濟貿易地帶 內에서는 建物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免除한다(제25조).

(5) 相續稅

37) 이는 세법상 住居地國 課稅主義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稅法의 태도와 一般 國際慣行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북한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북한 영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북한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제31조).

(6) 기타

이외에도 이 법은 輸出商品에 대해서 去來稅를 免除하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제42조 1항). 한편 去來稅 減免對象과 관련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2항).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 등 地方稅의 경우 特定稅率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制裁 및 申訴請願의 내용과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에는 勞動報酬에 의한 소득세율표, 贈與에 의한 소득세율표, 財產稅 세율표, 相續稅 세율표, 去來稅 세율표, 地方稅 세액표 등 6건의 附錄이 첨부되어 있다. 부록의 각 세율표는 공히 稅額을 누진적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累進稅制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³⁸⁾

바. 自由經濟貿易地帶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³⁹⁾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가들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새로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동 지대내에서 경제·무역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은 1991년 12월 선포된 나진·선봉 자유경

38) Supra note 3, p.A3.

39) 이 법의 立法目的에 관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조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하고 있다.

제무역지대를 비롯하여 앞으로 지정될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 법은 自由經濟貿易地帶法の 基本, 管理機關의 權限과 任務, 經濟活動 條件의 保障, 關稅, 通貨·金融, 擔保 및 特惠, 紛爭解決 등 7개 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다.⁴⁰⁾ 이 법의 특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우대조치 외에도 동지대 내에서의 投資節次의 分權化 및 簡素化, 가격결정의 자율권 인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화시장의 허용 등을 통해서 동 지대를 대외경제개방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自由經濟貿易地帶法の 基本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서비스) 지역으로 선포된 북한의 일정한 영역’을 말한다. 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북한의 主權이 행사되며, 이 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는 국가가 특별히 수립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제2조). 이러한 규정은 북한이 領土主權의 制限에 反對한다는 基本立場을 법령을 통해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⁴¹⁾

(2) 管理機關의 權限과 任務

자유경제무역지대의 管理機關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있다. 對外經濟委員會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

40) “외국인투자법의 후속조치로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등 채택” 「內外통신」, 8247호 (93. 2. 6), p. A2 ; Supra note 3, p.A4.

41) 북한은 1992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UNDP주관의 제2차 計劃管理委員會(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 PMC에서 國際管理(international management)에 동의한다는 점을 피력한 바 있으나(1992. 10.11 제2차 PMC)에서 채택된 Aide-memoire 참조),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영토주권의 제한에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기관이며,⁴²⁾ 地帶當局은 현지 집행기관이다(제8조).

對外經濟委員會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執行 對策 수립, 경제관리·운영사업 指導, 총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 건설대상과 총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그 밖의 投資對象의 審議·承認을 담당한다(제9조). 이에 비해 地帶當國은 행정경제부서와 외국투자관련 대외경제부서로 구성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조직·집행한다(제11조). 지대당국은 구체적으로 ① 주민행정, 도시경영 등 행정 경제사업 실시, ② 사회질서 유지 및 인신과 재산 보호, ③ 지대의 개발계획 작성·선전·집행, ④ 투자신청 접수, 총 투자액 2천만원 이하의 하부구조 건설대상과 총 투자액 1천만원 이하의 그 밖의 투자대상의 심의·승인 ⑤ 기업등록 및 영업허가, ⑥ 투자가의 인력채용 지원, ⑦ 토지 및 건물 임대 또는 양도, ⑧ 직·간접의 봉사 제공, ⑨ 지대 내 투자와 개발 촉진 및 관리·운영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12조).

이처럼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운영을 위한 機關을 中央의 對外經濟委員會와 現地 行政經濟部署인 地帶當局으로 한정하는 한편, 對外經濟委員會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開發과 管理運營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貿易部와의 業務分擔이 不分明했던 對外經濟委員會가 향후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을 이끄는 핵심기구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經濟活動 條件의 保障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제18조).⁴³⁾ 즉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모든 외국투자기업(합영-합작-단독투자 불문)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자유로운 企業創設과 經濟活動이 保障

42) 현재 중앙에 북한의 대외경제담당 부서인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은 李成大이다.

43) 이 조항은 外國人投資法에서 외국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單獨으로 투자,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하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제20조).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상품의 지대 내 반출입이 자유로이 허용된다(제17조 1문).

貿易船과 船員들은 國籍에 관계없이 지대 안의 貿易港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대 내에 출입하는 외국인에게 無査證制度를 시행한다(제41조).

외국투자기업이 원료·자재 및 부분품의 가공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있는 북한 기업소에 委託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된다(제24조).

상품의 價格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만 일부 大衆必需品의 가격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제22조). 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市場經濟原理의 部分的 導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북한경제체제에 적지 않는 파급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이 점을 의식하여 동조 후단에서 국가가 대중필수품 가격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⁴⁴⁾

(4) 關稅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特惠關稅制度가 실시된다(제25조). 가공수출 목적으로 지대 내로 수입한 상품,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지대 내에서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타국에 통과무역화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제26조). 단 외국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상품을 팔기 위해 반입하는

44) 金容浩, supra note 18, p. 21.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免除되지 않는다(제27조).

(5) 通貨, 金融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 거래할 수 있다(제34조). 지대 내의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 하에 非居住者들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제33조).

(6) 擔保 및 特惠

외국투자가 등에게 이윤, 이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 등 소득의 國外送金과 경영기간 종료 후 지대 내 搬入財産의 搬出이 허용된다(제35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企業所得稅率은 決算利潤의 14%로 한다(제36조).⁴⁵⁾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받으며, 임대 시 賃貸料 引下 등 便宜를 제공받는 한편(제38조 참조), 북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貸付받을 수 있다(제39조).

(7) 紛爭解決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意見 相異는 一次的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제42조),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紛爭事件은 北韓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제43조).

사. 外貨管理法

45)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9조 2항을 再確認한 것이다.

外貨管理法은 외화수입을 늘리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부단히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은 외화관리법의 基本, 외화의 利用, 외화의 搬出入, 制裁등 4개 장 31조로 구성되어 있다.⁴⁶⁾ 이 법에 따라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國家에 의한 集中管理 및 外國換業務 專門銀行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外貨管理法의 基本

外貨管理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 등에 대한 原則과 秩序를 규율한다(제2조). 외화에는 ① 轉換性 있는 外國貨幣, ②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外貨有價證券, ③ 수형(어음), 행표(수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外貨支拂手段, ④ 기타 외화자금, ⑤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 등 貴金屬이 포함된다(제3조).

外國換業務의 전문은행은 貿易銀行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제5조). 북한 내에서는 외화유통이 금지되며, 외화의 사고 팔기, 저금, 예금, 저당 등은 외국환 업무를 맡은 은행, 즉 무역은행 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외국환관련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제6조).

북한에서 合法的으로 取得한 外貨는 법적으로 保護되며, 相續도 가능하다(제9조).

(2) 外貨의 利用

외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貿易契約과 支拂協定에 따른 거래, 무역 밖

46) Supra note 33, pp.A1~A2.

의 거래, 은행에서 북한화폐를 사거나 파는 거래, 자본거래 등으로 制限함으로써(제11조) 외화의 流入에 따른 經濟混亂을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3) 外貨의 搬出入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과 귀금속은 제한없이 북한에 搬入할 수 있다(제22조). 그러나 搬出의 경우 그 對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外貨現金은 은행이 발행한 外貨交換 證明文件이나 入國時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 내에서만 북한 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제23조).

둘째, 外貨有價證券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 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반출할 수 있다(제24조). 自由經濟貿易地帶의 경우 해당문건이나 稅關申告書 없이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북한 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제25조).

셋째, 貴金屬의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 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입국시 반입한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 반출할 수 있다(제26조).

이처럼 북한이 外貨의 搬出入과 관련하여 반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入國時 申告한 외화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의 반출 등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외화관리기관의 承認 下에 외화를 搬出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外貨保有高를 늘리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외국투자가는 북한 영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送金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 없이 移轉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노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북한 영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제28조).

이것은 북한이 外國人投資法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기업의 과실송금과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勞賃 등의 送金을 허용함으로써(제27조 및 제28조 참조),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⁴⁷⁾

(4) 制裁

외화관리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情狀에 따라 罰金을 부과하며, 不法적으로 去來한 外貨와 物件을 沒收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銀行去來를 中止시킬수 있다(제29조). 重大한 結果를 초래한 자에게는 情狀에 따라 行政的 또는 刑事的 責任을 부과한다(제31조).

3. 問題點

가. 外國人投資法

첫째, 外國人投資法은 외국인과의 합영, 합작 및 단독투자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없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적용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宣言性(政策方向 천명)·抽象性이 그대로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불명확하며, 앞으로 보다 細部的인 基準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恣意的인 判斷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다.

가령 우대조치가 인정되는 投資獎勵對象과 관련하여, ‘첨단기술을 비롯한 現代的 技術과 국제시장에서 競爭力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제7조 및 제8조 참조). 또 投資禁止 또는 制限對象에 관한 조항인 제11조에 있어서도 ‘民族經濟發展과 나라의 安全에 支障을 주거나 經濟技

47) 內外通信, supra note 3, p.A4.

術的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이라는 不確定概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시 인정되는 특혜와 관련하여, 이 법은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즉 ‘덜어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인정되는지 동법 세칙에서 그 基準이 마련되지 않으면 恣意的 運用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제12조에 따른 投資財産의 評價時 現物財産, 工業所有權 및 技術의 評價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북한은 토지, 시설 및 설비등을 過大評價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측 기업의 公業소유권 또는 기술을 平價切下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투자재산의 가치는 국제시장가격을 기초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國際市場價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도 반드시 분명치 않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될 경우 合意導出도 낙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남북한의 기업들 간에 체결된 합작투자 계약에서 이 문제에 관해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의 所有權制度는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그리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土地는 원칙적으로 國家所有이다. 그 결과 外國投資家와 外國投資企業은 民法 및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土地賃借權 및 使用權 또는 管理權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北韓土地制度上 土地賃借權의 제3자에 대한 讓渡만이 가능하다. 자본주의국가에서 土地所有權者의 死亡時 인정되는 相續概念이 북한의 外國人 土地賃借制度에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이 국가로부터 賃貸받은 土地에 대하여 該當機關의 承認 下에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 여기서 북한이 相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資本主義 法概念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

는다. 또 대다수 국가의 民法上 財産權 相續의 경우 국가기관의 승인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제15조의 相續概念의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該當機關의 承認 下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해당기관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자체가 아예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넷째, 근로자의 僱傭이나 解雇 및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당국의 干涉과 排他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북한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노동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직원을 채용 또는 해고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당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 바 중국·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합작기업이 직접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⁴⁸⁾

다섯째, 外國人投資法은 原則적으로 國有化를 禁止하고 있으나(제19조), 「不可避한 事情」이 있을 경우 國有化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判斷에 있어서 북한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또 「該當한 補償」이란 용어도 漠然한 概念이다.

여섯째,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나 외국 투자기업의 産業財産權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장차 이러한 재산권의 보호를 둘러싸고 紛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 合作法

첫째, 북한식 合作의 概念에 의하면 外國投資家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48) 内外通信, supra note 14, pp. A3~A4.

되어 있기 때문에(북한측이 경영 전담) 투자에 대한 危險負擔이 매우 크다. 또한 북한의 합작기업은 북한법인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合作經營企業은 중국 내의 獨立法人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經營도 계약에 따라 理事會方式, 聯合管理機構方式 또는 一方當事者에 의한 委託經營方式 등이 모두 가능하다. 물론 북한식 합작기업이 매우 탄력적인 형태의 中國式 合作企業을 모방하여 모든 기업운영의 기초적 사항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중국에 비해 북한의 統制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평가된다.⁴⁹⁾

둘째, 合作對象의 業種, 獎勵事業의 對象業種 등에 대한 규정도 具體性이 缺如되어 있다. 가령 先進技術이 도입된 제품(제3조), 現代的인 설비와 첨단 기술, 국제시장에서 競爭力이 높은 제품(제4조) 등이 그러한 예이다. 북한은 施行細則 制定時 이러한 문제점을 是正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합작법은 “국가가 승인한 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원배분이 국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 하에서 과연 합작기업이 북한 내에서 物資購入 및 販賣 등 자유로이 物資調達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넷째, 합작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經營活動에 관한 한 危險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投資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는 原則的으로 合作製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13조), 事實上 投資家側이 그 販賣에 따른 危險을 부담해야 한다.

다섯째, 합작법 제14조는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 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쓸 수 있다(may)”는 규정은 任意規定의 形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反對解釋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여기서

49) 이 외에도 北韓式 合作企業의 경우, 북한측 당사사자 經營을 전담하고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中國式 合작기업의 경우, 經營權 및 利潤分配 등이 契約에 따르면 큰 제약은 가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국식 合作企業의 경우 이윤분배방식에 있어서 제한이 없음을 북한의 경우와 증대한 차이로 할 수 있다.

使用의 主體가 합작기업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외경제기관인지가 불분명하다.

여섯째,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합작이나 합영사업에 當局의 干涉이 어느정도는 불가피하나, 每月 經營決算을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것(제17조)은 지나친 干涉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법에서는 非常設的 共同協議機構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구를 통하여 외국투자가가 經營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 重要的 問題들을 협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항이 「重要的 問題」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둘러싸고 合作當事者 間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일곱째, 合作法은 북한당국의 承認 下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제19조 참조), 실제로는 다음 두가지 問題點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 하나는 契約不履行 責任이 북한측에 있다는 事實의 認定을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紛爭解決方式이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의 판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客觀的인 裁判이나 仲裁判定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여덟째, 일반적으로 합작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企業解散은 國際的인 慣例에 따른다. 그러나 合作法에 의하면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의 승인이 있어야 解散할 수 있게 되어 외국투자자에게 不利할 수 있다.

가령 기업의 赤字가 누적될 경우 외국측 계약당사자가 投資分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赤字累積에도 불구하고 資本減少를 불허하는 상기 法規定 때문에 외국측 투자가가 북한측 당사자와의 합의 하에 자유로이 기업을 해산하지 못하고 그 대신 계속해서 缺損分을 메꾸어야 할 경우 외국측 투자가는 대북투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홉째, 분쟁해결방식과 관련하여 基本法인 外國人投資法에는 분쟁발생시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合作法에는 ‘北韓內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 節次에 따라 심의·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제3국에서의 해결을 배제하는 식의 해석·적용가능성이 있다.⁵⁰⁾

다. 合營法 및 同 施行細則

첫째, ‘북한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체가 「다른 나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체·개인 및 경제조직」인지가 불확실하다. 북한의 국가사회제도 및 자주권 존중 원칙과 김일성, 김정일의 방침관철 규정은 물론 체제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삽입된 것인데,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해석권과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違反與否의 判斷權이 전적으로 북한에게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恣意的 解釋·適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합영법에 의할 경우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해외거주 조선동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事實上 합영당사자로 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臺灣同胞의 投資獎勵에 관한 規定」(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은 대만동포를 합영당사자로 명시하고 이를 장려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는 相對的으로 북한법의 閉鎖性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주로 북한이 출자하는 토지·건물 등 出資目的物의 評價基準이 불확실하여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투자자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投資保護도 出資持分에 대한 관련 법규의 미비로 債權的 水準의 保護에 그치고 있다.

넷째, 理事會의 意思決定方式이 매우 경직적이다. 즉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의 경우 이사 全員一致의 찬성, 기타 사항의 경우 출석 이사의 2/3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외국측 합영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50) 統一院 教育弘報局, supra note 4, pp. 16~18 ; 三星經濟研究所, supra 5, p. 44참조.

있다. 개정 합병법 시행세칙은 합병법 및 기존의 시행세칙 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 그리고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한 이사의 2/3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것은 대다수 국가의 의사결정방식(중요문제의 경우 출석한 이사의 2/3 찬성, 기타 문제의 경우 출석한 이사의 1/2 찬성이 필요) 보다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종업원의 僱傭이나 解雇 등에 있어서 북한당국의 간섭이 제도화되어 있어 합병기업의 自律權이 제한되고 있다.

여섯째, 합영회사 직원들은 북한 노동법상 勞動組合 설립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노동조합과 합영회사가 그 설립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社會團體가 어떻게 다른지 불명확하다. 또한 外國人企業法上 설립이 허용되고 있는 職業同盟과 社會團體의 관계도 모호하다.

일곱째, 합영회사 解散時 投資回收分에 대한 送金保障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⁵¹⁾

라. 外國人企業法

첫째, 외국인기업의 설립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로 한정되고 있으나, 현재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된 羅津·先鋒地域의 경우 短期的으로 볼 때 常住人口 不足, 社會間接資本施設 未備 등으로 투자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51) 統一院 教育弘報局, supra note 4, pp. 13~14 ; 합병법의 문제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法制處, supra note 27, pp.225~245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北韓의 貿易 및 外國人投資制度」(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p.67~68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p.64~66 ; 한국외환은행, (서울: 한국외환은행, 1991), pp.16~18 ; 全洪澤·曹東昊, “南北韓投資協力の 政策課題,” 「南北韓 投資協力の 當面課題와 豆滿江地域開發計劃」(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2), pp.28~36 ; 申東秀, “북한합영법의 종합적 비판,” 「통일한국」, 통권 제12호(1984년 12월), pp.56~65 ; 裴鍾烈, “北韓의 合營法施行細則 改正과 우리의 對應方向,” 「輸銀調查月報」, 제 12권 5호 (1993, 5), pp. 2~53 참조.

따라서 아직까지 이 지역은 외국투자가에게 단독투자를 할 만큼 魅力的인 投資對象 候補地가 되지 못하므로 법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投資誘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外國人企業法은 ‘나라의 安全에 지장을 주거나 技術的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으며(제3조 참조) ‘人民經濟發展에 障礙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참조), 이들에 대한 概念 및 判斷基準이 모호하다. 북한당국이 이러한 불확정개념을 惡用할 소지가 많다.

셋째, 기업창설에 필요한 문서인 ‘정무원 자금사용확인서를 비롯한 審議·批准에 필요한 文件’(제7조)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

넷째, 外國人企業은 기업을 등록한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生産 및 輸出入計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5조), 保險도 北韓保險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바(제23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의 보험제도는 현재 극히 미비한 상태이며 보험기관의 위험담보 능력도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분간 외국인기업이 기업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은행에 輸出保險을 들거나 별도의 國際保險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법은 “외국인기업은 …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財政簿記計算規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9조), 앞으로 이 조항의 後續措置로서 社會關聯 法制的 補完·整備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⁵²⁾

여섯째, 이 법의 경우에도 僱傭의 硬直性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제20조 참조). 특히 북한의 다른 외자유치관련 법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職業同盟組織을 악용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제21조 참조).

52) 그나마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合營法 등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

일곱째, 외국인기업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제26조 참조), 외국투자가의 自由로운 經營活動을 저해할 수 있다.

여덟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29조), 여기서 行爲主體가 모호하고 惡用可能性 마저 내포하고 있다.

아홉째, 紛爭事件 역시 合作法과 마찬가지로 북한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만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간 합의를 조건으로 제3국 중재기관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外國人投資法과의 괴리가 노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이 조항의 適用時 북한당국의 恣意性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⁵³⁾

마.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첫째,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은 企業所得稅의 경우 중국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個人所得稅의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 다소 不利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개인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세칙에서 1년이상 5년 미만 거주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중 중국으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단 6년째부터는 북한과 동일), 북한의 경우 “공화국 영역 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7조).

둘째,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은 「適用範圍」에 ‘공화국 영역 내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영역 밖 거주 조선동포’(제6조)도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이 우리 기업의 對北投資에 대해서도 규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

53) 統一院 教育弘報局, *op. cit.* 4, pp. 20~21 ; 三星經濟研究所, *supra* 5, p. 44 참조

로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에서 南北間 二重課稅 防止 및 投資保障 등에 관한 별도의 合意가 이루어질 경우 이 稅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것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으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7조). 따라서 만일 남북간 합의를 國家間的 協정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간에 조세와 관련한 보다 유리한 合意가 이루어지더라도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야기될 수 있다.

셋째, 상속세관련 조문은 특히 거주 외국인이 北韓領域 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朝總聯系 北送同胞 및 북한에 거주하는 日本人 妻中 北韓國籍 未取得者들이 在日家族으로부터 받게 되는 財產相續分을 북한으로 환수하기 위한 意圖的 措置라고 판단된다. 이는 二重課稅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이 과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一時滯留 外國人의 海外 相續財產에 대해 課稅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⁵⁴⁾

바. 自由經濟貿易地帶法

첫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도 북한의 인력알선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서만 인력을 채용·해고하도록 하고 있어 勞務管理의 硬直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너무나 일반적·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령 檢疫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다. 또한 아무리 자유경제무역지대라 하더라도

54)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居住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 국가안보사범, 마약사범 등의 자유로운 출입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마치 완전히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 듯하나,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出入國管理法이라는 一般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같은 법에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일반법을 전제로 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특례를 정하는 것이 法理上 妥當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소위 「黄金의 小三角地域」(Golden Triangle)에 속하는 북한지역이다. 현재 UNDP는 이 지역을 國際管理 하에 개발하여, 장차 國際都市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장래를 내다 볼 때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조선 「원」화만을 유통화폐로 하는 한편, 모든 결제는 조선 「원」 또는 전환성 화폐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국가의 干涉이다. 물론 북한이 외화수입을 위해서 북한화폐로의 교환을 의무화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外國人 投資 保護의 차원에서 그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 법의 규정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경우 販賣者와 購買者 間의 合意에 의해 價格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市場形成의 可能性을 열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장기능 활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사는 확실한 것 같지 않다. 자유경제무역지대가 對外經濟開放의 窓口役割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中國의 經濟特區와 마찬가지로 資源配分을 市場調節機能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⁵⁵⁾

55) 中國의 經濟特區 戰略은 經濟特區를 對外經濟開放의 窓口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經濟的 目標), 特區에 시장경제체도를 도입,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융합시킴으로써 소위 「中國式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體制改革의 目標).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중국은 특구 내의 생산과 유통 등 資源配分을 주로 市場調節機能에 맡겨 왔다.

사. 外貨管理法

첫째, 외국투자기업은 貿易銀行 또는 外貨管理機關이 승인한 은행에 外貨口座를 설치하고, 모든 외화거래는 이 구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 외화이용기관·기업소·단체는 分期別·年間別 외화재정상태 表를 外貨管理機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의 외화통제가 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북한의 외화관리제도는 외국투자기업의 所要 外貨를 輸出이나 海外導入등을 통해 자체 조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內需市場에 판매하여 북한 「원」화를 이윤으로 얻는 경우 自由轉換性 通貨로서 兌換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는 이윤과 기타 소득을 전부 送金하거나 自己資本을 제한없이 移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 27조), 실제로는 외화로 받은 이윤이나 기타 소득이 아니면 외화로 송금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 종업원은 임금 등 合法的으로 얻은 外貨의 60%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例外的으로 그 보다 많은 송금액을 허용하는 例外規定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⁵⁶⁾

56) 중국의 경우 합법적 수입의 50%까지 송금할 수 있으나, 國家外貨管理局의 承認을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外資誘致關聯 法令과 韓國의 對北投資 保護方向

1. 對北投資 保護 및 北韓法令 改善要請方向

북한에서 남북한 기업이 合營, 合作 등의 방법으로 공동개발 또는 협력사업을 하거나 또는 單獨投資할 경우 事業의 主體는 現地法人으로서 원칙적으로 北韓法의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투자보호를 위한 법적 투자환경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전술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한국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우리기업의 對北投資 保護方向中 중요한 것 몇가지만을 摘示하기로 한다.

첫째, 外國人投資法에서도 과거 合營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⁵⁷⁾ 가령 ① 투자기업의 출자금액 감액불가, ② 이사회 의 意思定足數 불분명, ③ 의사결정 방식의 엄격성,⁵⁸⁾ ④ 직원의 채용 및 해고시 북한 노동행정기관의 허가 필요 등 勞務管理의 경직성, ⑤ 회사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 등록자본금의 최소·최대금액 및 출자비율의 상·하한선 등에 관한 규정의 미비, ⑥ 등록자본금이 납입된 자금인지 또는 계약상의 금액인지 여부의 불분명, ⑦ 합영회사, 합작회사, 외국인기업의 사장 및 부사장 선임방법의 불확실, ⑧ 합영회사에 대한 외화대출 기간, 한도 및 대출절차 불규정, ⑨ 현물자산, 발명권 등 화폐 이외의 출자 대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과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구체적 결정기준의 불분명 등이 그것들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合營법 시행세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 같지 않다.

57) 諸成鎬, *supra* note 15, pp. 201~202.

58) 개정 合營법 시행세칙은 合營법 및 기존의 시행세칙 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 그리고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한 이사의 2/3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것은 대다수 국가의 의사결정방식(중요 문제의 경우 출석한 이사의 2/3 찬성, 기타 문제의 경우 출석한 이사의 1/2 찬성이 필요)보다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경우에도 ① 김일성·김정일의 방침 및 북한의 국가사회제도 및 자주권 존중 등 자의적 해석·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용어 존재, ② 외국투자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미흡, 기술도입 관련 법령 不在 및 企業破産에 관한 法令(외국인기업법 제30조 참조)의 未制定, ③ 勞務管理의 경직성, ④ 거래의 경직성 및 제한성, ⑤ 분쟁해결 방법의 제한성, ⑥ 外國人投資關聯 財政簿記計算規範 또는 會計規程(외국인기업법 제19조 및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3조 참조) 미제정으로 인한 기업회계제도의 불명확, ⑦ 토지임대료의 자의적 결정위험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나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法制度 補完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에 유의하여 事前에 그에 대한 對處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① 기술도입 및 산업재산권 보호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와 공개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투자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미흡과 관련하여 우리기업의 특허 및 상표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② 勞務管理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계약체결을 통한 直接雇傭을 인정토록 하며, ③ 북한내 거래는 무역기관을 통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直接去來를 許容하고, ④ 외국인기업의 경우 분쟁발생시 북한 중재·재판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제3국 중재를 인정하고, 또한 우리기업의 경우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또는 여타 기관에 의한 仲裁를 許容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⁵⁹⁾

이외에도 ⑤ 북한의 企業會計제도의 未備, ⑥ 土地 賃貸料의 恣意的 決定可能性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외화관리법은 물론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에서 外換換差損益評價 등에 대한 會計處理와 원가계산, 감가상각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무적 측면에서

59) 全洪澤, 曹東昊, *supra* note 51, pp. 28~36 참조.

적지않은 미비점과 분쟁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앞으로 북한에게 기업회계제도와 관련하여 中國의 會計法 水準 또는 그 以上の 國際的 會計基準의 採擇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土地 賃貸料의 恣意的 決定可能性을 피하기 위해서는 土地 賃貸料의 標準化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객관적 기준의 설정 및 토지임대제도의 보완·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⁶⁰⁾

이 외에도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에서는 현물자산, 발명권 등 화폐 이외의 출자대상, 특히 발명권이나 기술문헌 등 無形의 知的 財産權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불분명하여, 이러한 무형재산의 평가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에 평가를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¹⁾

요컨대 우리측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관련 법령의 補完 또는 改善을 요구함으로써 根本的인 解決(立法的 解決)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제정된 법령의 문제점을 개정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최근 제정된 북한법령 改正을 북한측에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북한측도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를 보완한 優待措置를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자에 적용하도록 북한당국에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中國과 같이 別途의 優待法律(特例法)을 제정해 주도록 북한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²⁾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60) 중국은 1986년 標準土地使用料에 관한 規程을 제정하여 토지임대료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全洪澤, *supra* note 14, p. 9.

61) *Ibid.* p. 10.

62)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臺灣同胞의 投資獎勵에 관한 規程」(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 規定)은 대만동포를 합영당사자로 명시하고 이들에 의한 투자를 장려·우대하고 있다.

은 다음 <표 6>로 대체하고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표 6> 北韓 外國人投資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주요 내용	개선 방향
외국투자자 범위	공화국영역밖 조선동포 포함	한국기업·개인 포함 명시
외국기자재 수입	합작기업은 국가승인 필요	승인절차 및 조건 명시
설립지역 제한	외국인기업 설립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정	지역제한 완화 또는 폐지
투자상환과 이윤분배	합작기업은 제품을 기본으로 함	계약에서 정하도록 함
결산	합작기업은 월별, 분기별, 연별 결산	연별결산
분쟁처리	외국인기업, 합작기업의 경우, 북한 중재기관·재판기관	경제교류협력공동위 또는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
노동관리	노동기관을 통해야 함	직접고용도 인정
투자계약기간	규정 없음	기간 명시
승인처리기간	합영기업은 규정 없음	처리기간 명시
보험	가입시 북한보험기관	제3국보험, 제3자보험 인정
기술도입	관련법령 부재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토지임대료	관련규정 모호	임대료 표준화
기업회계제도	관련제도 불명확	중국의 회계법 또는 그 이상 수준
상속세	거주외국인이 북한영역 외에 있는 재산상속시 적용	이중과세가 되므로 면제

<出處> 全洪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北韓經濟研究센터 研究資料 93-05(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3. 3), p. 61.

둘째, 外國人投資法이 원칙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을 禁止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國有化 또는 收用 危險으로부터 우리기업의 대북투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不可避한 事情」이 發生한 경우'에는 국유화 또는 수용할 수 있다는 但書가 있기 때문이

다. 문제는 「不可避한 事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의 判斷은 1차적으로 資本導入國인 북한이 행하게 될 것인 바, 이에 관해서 북한이 恣意的인 判斷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南北投資保障에 관한 細部 合意書를 체결할 경우 이 「불가피한 사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網羅的 列舉規定을 마련해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³⁾

또한 대북투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通常의 國有化 외에도 이른바 蠶食的 또는 僞裝國有化(creeping or disguised nationalization)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僞裝國有化란 重課稅와 株式의 強制賣却 등의 조치와 같이 僞裝戰術을 동원하여 사실상 수용과 국유화에 상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유사조치를 말한다.⁶⁴⁾

대북투자의 경우 政治的 危險性이 크기 때문에 南北 投資保障에 관한 細部 合意書를 채택할 경우 收用이나 國有化에 관한 규정에서 이들도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北韓의 恣意的인 行爲를 抑制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법의 補償規定도 매우 추상적인 것을 감안하여 補償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⁶⁵⁾ 특히 外國人投資法上 「該當한 補償」의 의미를 명백히 해두는 것도 對北投資 保護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⁶⁶⁾ 즉

63) 다만 한가지 유의할 것은 南北投資保障協定에서 國有化 禁止의 例外를 명시할 경우 公式的이고도 合法的으로 북한의 국유화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어 동 협정의 국유화 금지조항의 효과를 퇴색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국유화금지만을 명시하고, 이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될 投資契約 특히 북한당국과 한국기업간의 投資契約(國家契約)에서 국유와 내지 수용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制限的(網羅的)으로 열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어느 경우이든 불가피한 사정의 열거가 例示的 列舉로 해석될 여지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64) 이 문제에 관해서는 Marin Domke, "Foreign Nationalization : Some Aspec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Selected Readings on Protection by Law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s*(New York :Matthew Bender & Co., 1973), p. 310; Earl Snyder, "Protection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Examination and Appraisal",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0(1961), p. 472.

65) 諸成鎬, "南北投資保障協定 締結方向", 「남북교류협력의 실천과제연구-외부전문가 위촉원고 모음」(서울:統一院, 1992), pp. 96~97 참조.

66) 1992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東北亞圓卓會議(The Northeast Asia Round-table : NEAR)에 북한측이 제출한 外國人投資法의 非公式 英文翻譯本에서는 「해당한 보

「해당한 보상」이 一般國際法上 인정되는 正當한 補償(just compensation) 또는 充分·迅速·有效한 補償(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인지 아니면 相當한 補償(reasonable compensation)인지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⁶⁷⁾ 사실 이러한 개념들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도 역시 不確定概念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투자보장협정이나 투자계약에서 보상액은 국유화 또는 수용되는 재산이 갖는 國際時價의 최소한 몇 %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次善策으로서 「해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概念上의 混亂을 피하기 위해서 상기 3가지 개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英語로 표기하여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⁸⁾ 그러나 북한이 이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最小限의 對策으로서는 ‘國內적으로 不可避한 경우 法律에 의해서만, 또 市場價格·國際基準에 따른 補償을 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해둘 것이 요망된다. 또한 북한의 補償實際에 관한 情報을 수집하여 보상수준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是正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합작법은 利潤分配나 償還을 생산제품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外國投資家側이 그 販賣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바, 외국투자가측은 제품의 販路를 확보하고 합작계약을 체결해야 투자로 인한 不測의

상」을 fair compens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 *Northeast Asai*, FBIS-EAS-92-203, 20 October, 1992, p. 15.

67) 일반적으로 先進國은 正當한 補償(just compensation) 또는 充分·迅速·有效한 補償(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n)을, 開發途上國 또는 後進國은 相當한 補償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補償의 개념에는 完全補償(full compensation), 部分補償(partial compensation), 限定的 補償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李仲範, 「外資國有化論」 (서울:一潮閣, 1975), pp. 110~120 참조.

68) 이 경우 상기 3개 개념중 어느 하나의 채택이 어렵다면 절충안으로서 FBIS의 자료에서 사용된 fair compensation이라는 용어의 표기가 바람직하다. fair는 just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된다.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작법은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反對解釋이 성립할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북한이 合作生産後 損害發生 또 豫備基金 積立 등의 이유로 먼저 償還 또는 分配義務를 이행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任意規定이 아니라 ‘먼저 써야 한다’는 義務規定으로 改正하도록 북한측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나진·선봉지역에 우리기업이 투자할 경우 기업을 등록한 道行政經濟委員會에 生産 및 輸出計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保險도 北韓保險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 또는 별도의 國際保險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南北間投資保障에 관한 細部合意書 채택시 代位辨濟權의 明示가 필요하다.⁶⁹⁾

여섯째, 기업소득세 등 조세 감면조항이 모두 “...%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may)”고 하여 任意的 減免條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덜어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북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북한에게 이러한 조항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는 “던다”라는 必要的 減免條項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細則에서 소득세 감면의 基準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북한측의 恣意的 適用可能性을 배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일곱째, 북한의 外貨管理法은 이윤이나 기타 소득 및 자본환수 등의 외화송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는 바, 우리 기업의 북한당국과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합의서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외화로 받은 이윤이나 기타 소득이 아니면 외화로 송금할 수 없을 것인 바, 합법적 소득 또는 자기

69) 南北投資保障에 관한 細部合意書 締結의 方向과 主要內容에 관해서는 諸成鎬, *supra* note 65, pp. 85~104 참조.

자본에 대한 송금에 대해서는 북한 「원」 화를 交換性 通貨로 교환할 수 있음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改正 合營法 施行細則은 합영회사에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액의 필요한 부분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80조)고 규정하여 「필요한 부분」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북한당국의 자의적 적용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행세칙이 명시적으로 노임액의 60% 이상을 송금할 수 있다고 한 규정보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의 송금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막연히 송금이 가능하다는 一般規定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⁷⁰⁾ 이들 법령의 시행세칙에서는 반드시 일정 액 이상의 송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북한 당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이 외에도 投資獎勵部門의 定義가 抽象的이고 優待條件이 宣言的이므로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관련제도의 보완·정비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⁷¹⁾

2. 對北投資時 考慮事項

아울러 한국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특히 다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하여 事前에 對備策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한국이 對北投資에 앞서 交流協力分野의 附屬合意書에 의거하여 남북한간에 조속히 投資保障 및 二重課稅防止에 관한 細部合意書를 채택하는 등 法律制度 整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은 외국과의 稅金協定이 동 세금법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의적 적용가능성이 큰 세금법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70) 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작법 제15조 및 외국인기업법 제22조 참조.

71) 이 외에도 對北投資 保護方案으로는 合作投資契約을 통한 보호 및 投資保障協定에 의한 보호를 들 수 있다. 이들에 관해서는 諸成鎬, 「對北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참조.

위해서는 북한당국과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동 합의서가 세금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합의서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협정들에 대한 後續措置로써 필요한 國內立法措置가 취해진 연후에 우리 기업들이 북한 기업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공사를 하거나 개발에 참여할 경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한국기업과 북한의 기업 또는 공공단체간의 남북합작투자 또는 공동개발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 대북투자가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關聯契約에서 가능한 法的保護方案을 강구하여 자세히 명시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⁷²⁾

둘째, 제일 먼저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북한측과 체결하는 계약은 先例로 남아 後發企業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기측에 유리한 標準定型契約書를 가지고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먼저 북한의 標準定型契約書 및 실제로 각국과 체결한 契約書(주로 합영계약서)들을 입수, 이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기업이 共同協力하여 우리측의 標準定型契約書와 標準企業規約(또는 定款)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중국 등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法體系와 法運用의 實際에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바, 남북한간에 示範協力事業을 할 경우 우리정부와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外國人投資制度 및 實際的인 法運用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경우 우리의 國內法上으로도 여러가지 法的問題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한국은 이에 관한 法的근거 마련에도 소홀히

72) 이에 관해서는 張孝相, “法的妥當性的 측면에서 본 南北經濟交流와 協力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35권 1호(1990), pp. 34~47 참조.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海外建設促進法」이나 「職業安定 및 雇傭促進에 관한法律」 등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⁷³⁾

넷째, 이 외에도 한국인 근로자가 북한에 진출할 경우 노동법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북한지역 내에서 南北韓 勤勞者의 差別的 待遇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남북한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ILO의 노동관계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먼저 북한의 ILO 加入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⁷⁴⁾

다섯째, 아울러 우리 근로자의 私生活의 秘密 保護, 住居 및 通信의 不可侵 등 基本的人權의 制約이나 活動上의 不便 招來를 방지하기 위하여 國際的 水準의 人權保護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V. 綜合的 評價

1. 肯定的 側面

북한이 당면한 經濟難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합영법이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기존의 投資誘致關聯法 令만으로는 충분한 外資導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근 북한은 새로이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6개의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 정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먼저 肯定的인 側面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外國人投資法 등 3개 외자유치관련 법령 제정과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 등 後續 法令 補完措置로 북한의 外國人投資制度는 外形上으로는 대폭 개선되었다. 북한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제도의 특징과 개선된 사항은 ①

73) 諸成鎬, *supra* note 15, pp. 206~207 참조.

74) *Ibid*, pp. 201~202 참조.

中國의 經濟特區 방식 수용에 의한 투자우대지역(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② 外國人の 100% 全額出資 등 다양한 투자형태의 허용, ③ 優待措置 강화 등 투자유인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尖端科學技術分野에 대한 優待措置를 취한 것이라든가, 또는 과거 합영법에서는 외국인인 전액출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법이 비록 100% 外國人 單獨投資 허용을 自由經濟貿易地帶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전액 외국인출자에 의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허용한 것은 외자유치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이 50년 임대, 각종 세제상 혜택, 외국인 투자재산의 國有化 禁止, 利潤의 國外送金 許容 및 經營秘密 保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合意에 의한 價格決定 등은 앞으로 외자유치 및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이 適用稅率을 中國보다 대부분 낮게 책정함으로써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보다 북한이 相對的으로 유리한 外資進出 條件을 제시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부분이다⁷⁵⁾

이처럼 북한이 합영법 발표이후 8~9년만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한 것은, 제한적이긴 하나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法·制度的 裝置의 보완을 통하여 외국인의 對北投資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外國人投資를 獎勵한다는 原則과 政策方向을 구체화함으로써 對外經濟開放의 政策轉換 意志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북한이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主體經濟路線을 추진한 결과 선진 과학기술 도입을 소홀히 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낙후는 물론 경제난 심화를 초래하였음을 뒤늦게나마 인식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둘째, 최근 제정된 일련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에서는 과거에 비해 透明性과 具體性이 제고되었다. 기존 합영법 체계하에서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은 합영법, 합영회사 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및 이들의 시행세칙이 전부였고,

75) 三星經濟研究所, *supra* 5, p. 42;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 2면 참조.

기타 사항은 북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는가가 불명확하였다. 또한 법령의 내용도 抽象的이고 宣言的이었기 때문에 합영관련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 金日成 및 金正日의 方針이나 北韓 監督機關의 判斷에 委任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2년 10월에 개정된 합영법 시행세칙은 합영회사의 법적 성격과 활동범위, 합영회사의 조직, 등록절차, 청산절차 등에 관해 보다 상세하고 투명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⁷⁶⁾

여기서 기존 合營法과 신설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및 外國人企業法을 比較하면 다음 <표 7> 및 <표 8>과 같다.

<표 7> 外國人投資法과 合營法과의 比較

구 분	외국인투자법	합 영 법
적용대상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합영기업
투자당사자	○ 외국의 회사 및 개인 ○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	○ 외국의 회사 및 개인 ○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
투자대상 지역	○ 합작 및 합영기업 : 북한 전지역 ○ 외국인 기업 : 자유경제 무역지대(나진, 선봉)	○ 북한 전지역
투자분야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금융, 과학, 기술, 관광, 유통등 여러분야	공업, 건설, 운수, 과학, 기술, 관광 등 여러분야
조세감면	이윤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감면	영업시작후 3년간 소득세면제, 3년 이후 순소득이 적을 경우 감면면제
토지의 사용	50년이내 토지임대 허용(임대기간내 토지의 안정적 사용가능)	토지사용시 사용료 납부
투자의 장려 및 제한	투자 장려사업 및 금지 또는 제한 사업 설정운용 자유경제무역지대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 없음

76) 裴鍾烈, *supra* note 15, pp. 11~14 : 이러한 투명성과 구체성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려 및 투자제한, 통제조항들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외국인 투자법	합 영 법
국유화 금지	국유화 금지, 불가피하게 국유화할 경우 보상	보상 없음
기 타	규정없음	이사회 운영, 합영회사의 물품구매, 결산과 분배, 해산 및 기간연장

<出處> 동용승,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계 법규 정비의 배경 및 의미”, 「世界 經濟」(三星經濟研究所), 제41호 (1992. 10. 25), p. 51 참조.

<표 8> 合營法과 新設 合作法 및 外國人企業法の 比較

	합 영 법	합 작 법	외국인기업법
설립지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정
합영 분야	공업, 건설, 운수, 관광 등	수출부문, 선진기술부문, 관광·봉사	전자, 자동화, 기계, 식품 가공등, 안보 위해 및 기술낙후기업 불가
승인처리기간	규정 없음	50일 이내	80일 이내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국내거래는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야 함	규정 없음	국내거래는 해당 무역기관을 통해야 함
고용해고	노동기관을 통해야 함	규정 없음	노동기관과의 계약에 따름
직업동맹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직업동맹의 활동 보장
보 험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북한 보험기관으로 제한
소 득 세*	25% (자유경제무역지대 14%)	법이 정한데 따라(합영기업과 같은 것으로 추측됨)	14% 이윤발생후 3년 면제, 2년연장가능(50% 면제)
관 세	수입관세 면제	규정 없음	수출입관세 면제
기타 조세	외국인투자법상 재산세, 기업운영세	左 同	左 同
減 資	허용 안됨	규정 없음	허용 안됨
분쟁 해결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	左 同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회계, 세무 감독	재정검열원의 검열	재정은행기관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

*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름.

<出處> 全洪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北韓經濟研究센터 研究資料 93-05(서울:韓國開發研究院, 1993. 3), p. 49.

셋째, 과거의 합영법은 ‘북한 영역 안에서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또는 기업소 또는 개인과 합영하는 경우에 적용’ 되도록 하고, 例外的으로 ‘재일 조선상공인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조선」 정책에 따라 한국은 合營法에서 말하는 ‘다른 나라’가 아니며, 더욱이 한국은 ‘海外’의 地域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同法の 南北關係에 대한 適用은 法理上 不可能하였다.

그에 비해 신설된 外國人投資法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동법 제5조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自由經濟貿易地帶法の 경우에도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외에도 신설된 외국인투자관련 법령들은 모두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비추어 한국인이나 한국기업도 외국인이나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는 解釋이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100% 全額出資하는 單獨投資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⁷⁷⁾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 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 末尾에서는 남북한의 정식국호가 표기되고 있는 바, 外國人投資法에 의할 때 대한민국은 「공화국 영역 밖」의 지역이라는 해석도 일견 形式論理的으로는 가능한 듯이

77) ‘共和國 領域 밖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同胞’라는 표현은 한국인의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과거 合營法에서는 남한 기업이나 개인을 투자당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新說法令들에서는 모두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남한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對北投資 門戶를 事實上 開放한 점도 肯定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統一院 教育弘報局, *supra* note 4, p. 22 참조: 동일한 맥락에서 貿易船 및 船員들에 대해서 無查證制度에 의한 自由入港을 허용키로 한 조치는 외국투자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낙관적 견해도 개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라는 개념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대북 직접투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관해서는 裴鍾烈, *supra* note 51, pp. 11~12.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직까지 북한의 대남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감안할 때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에 입각하여 여전히 「共和國」을 韓半島全體로 解釋하고 있다는 主張⁷⁸⁾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관계에 있어서 法的인 形式論理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간 체결된 諸合意書에서는 서명란을 제외한 본문에서는 正式國號는 물론 남한, 북한도 아니고 南側, 北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도 아울러 유의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는 合理性이나 一般的慣例에 따라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북한당국의 政策宣言이나 法令의 有權解釋 등 明示的 態度表明을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논쟁을 엄밀하게 평가할 경우, 法的·經濟的 意味보다 오히려 북한이 견지하여 온 「하나의 조선」 政策을 拋棄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政治的 意味가 더욱 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합영법 제정후 외국인투자법 制定前이나 또는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된 지금이나 韓國企業이 「事實上」 북한에 진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인투자법 제정시 우리 기업의 대북한 진출은 當該企業 自身의 이름으로 直接 투자한 형태는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우리 기업이 在日同胞 또는 在美同胞 심지어 제3국인과의 合作投資에 의하여 제3국에 現地法人-단지 「書類上의 會社」(paper company)인 경우가 많다-을 설립하여, 우리 기업이 제3국 法人의 名義 속에 파묻힌 상태로(북한이 입장에서 보면 外國人 資格으로) 진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經濟的인 觀點에서 볼 때는 역시 북한에 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8) 李東馥, “남북대화: 1993년의 전망,” 「새시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남북문제 대토론회(서울: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1992. 12. 28), pp. 36~37참조: 합영법에는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한 해외거주 조선동포」로 되어 있었으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동법의 人的 適用範圍에 있어 종전보다 포괄적이거나, 남한의 기업·개인 포함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보호대상에 「대만동포」를 명시하고 이들의 대중국 투자를 장려하는 중국의 「臺灣同胞의 投資獎勵에 관한 規程」(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과 비교하여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2. 否定的 側面

한편 이번에 단행된 外資誘致關聯 法令整備는 이상과 같은 肯定的인 側面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군데서 否定的인 側面도 나타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모든 투자조건들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基本的인 問題點을 안고 있다. ① 투자장려부문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優待條件이 宣言的이며, ②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를 생산제품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투자위험을 외국투자가가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③ 從業員 採用의 排他성과 北韓產 原資材 優先 使用原則, 北韓 國內保險加入 規定 등 경영활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어렵고, ④ 분쟁발생시 현실적으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며, ⑤ 법의 解釋이나 適用에 있어서도 북한측의 恣意性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둘째,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 합법적 권리와 이익 또는 투자자본과 소득을 ‘法的으로 保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⁷⁹⁾ 여기서 法的 保護의 대상인 기업의 재산권(소유권)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즉 北韓 民法에 따라 보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國際法的으로 보호한다는 것인지가 不分明하다. 일견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⁸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 민법에서는 소유권의 종류를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북한의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재산권이

중

79) 외국인투자법 제4조, 합영법 제4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조 참조.

80) 外國人投資法上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 등 외국투자기업은 北韓의 法人으로 설립되므로 一次的으로 북한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⁸¹⁾ 우리측은 이처럼 분명치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北韓民法上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되도록 북한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및 외화관리법 등이 외국기업의 과실송금과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勞賃 등의 送金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외화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硬貨로 송금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⁸²⁾ 북한의 극심한 外貨不足을 고려할 때 外貨管理가 매우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기업이 아니면 이윤송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러시아와 유고슬라비아가 각기 명문의 규정으로 계약의 종료나 회사의 解散時의 투자원본의 회수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합영법은 남은 재산의 분배만을 규정하는 한편, 동 시행세칙에서도 회사 해산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⁸³⁾ 넷째, 최근 단행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법령의 폐쇄성과 경직성이 잔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가령 고용

81)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서도 外資系 企業의 재산소유 형태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가지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합작투자기업의 所有權은 所有權法이 아니라 그 보다 下位에 있는 契約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鈴木輝二, 「東西經濟協力と法」(東京:三省堂, 1987), pp. 105~106: 다른 하나는 중국의 헌법이 全人民에 의한 社會主義所有와 勞動者에 의한 社會主義 集體所有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중국에서도 다른 형태의 소유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Masanobu Kato, "Civil and Economic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0 (1982), p. 453;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중국학자들이 個人所有企業의 存在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Tang Yufeng and Zhan Xiaoning, "Some Outstanding Issues on the Relations between TNCs and Host Country: From a Developing Host Government's Perspective," 「저스티스」, 제23권 1호(1990), p. 170 참조.

82) 이에 비해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외화송금을 허용하고 있고, 중국도 外換管理暫定條例에서 중국은행을 통하여 과실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張孝相, *supra* note 72, p. 55.

83) *Ibid.*

및 해고는 노동기관을 통해야만 하며 勞動黨 外廓團體인 職業同盟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과 같이 勞務管理에 있어서도 社會主義經濟의 경직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⁸⁴⁾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관련법 상호간에도 내용상 矛盾이 되고 전반적으로 법규의 抽象性으로 인하여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외국인투자법 등의 법률과 각각의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필요한 법령의 追加制定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최근 북한이 일련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경제개방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法令은 다분히 一般的·總論的 規定들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後續措置로서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된 다음에야 투자환경의 개선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소기의 성과」는 각 법률의 시행세칙 제정과 내부 법과 투자관련 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된 뒤에나 나타날 것이다.

VI. 結 論

1. 展 望

1992년 10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단행된 일련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합영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법령의 구체성 결여로 인한 외국인의 대북투자 기피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제의 정비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외채 지불연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최하위

84) 러시아의 경우에도 구소련 시절부터 勞務管理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에 의한 勞使關係가 합작투자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 Tracey E. Aronson, "The New Soviet Joint Ventrue Law; Analysis, Issues, and Appkroaches for the American Investro,"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19(1987), p. 875.

의 國際信用度, 開放·改革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물론 최근 현안으로 부상된 북한의 核問題 解決에 대한 지연전술 등 불명확한 태도 등은 당분간 계속 대 북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⁸⁵⁾

북한이 대동구 무역의 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자유경제무역 지대 선포, 외자유치관련 법제도 정비 등 대외경제개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제개방의 파급효과를 극소화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制限된 經濟開放」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난 해소를 이유로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당분간 북한은 「地域的」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외국인 투자의 실험장으로 이용하는 한편, 投資形態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租稅減免 등 각종 優待措置를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기업도 동 지역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둘째, 외국과의 經濟協力 形態面에서는 체제유지를 제1의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北韓體制의 特性 및 外換事情을 감안할 때 短期的으로 북한은 북한측이 경영을 담당하고 투자상환과 이윤분배를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하는 合作企業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은 체제에 미칠 여파를 차단키 위해 外國人 單獨投資(100% 출자) 地域을 나진·선봉지구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法制面에서 볼 때 外國人 投資法에 따른 종업원 채용을 북한의 노동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여전히 閉鎖性과 硬直性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북한이 제한된 지역만을 개방하고, 북한근로자를 철저히 감독하여 「統制된 開放」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이 經濟體制 및 制度 改革을 병행하지 않는 채 투자관련 법령 정비만으로 과연 대외경제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⁸⁶⁾ 다시 말해서 북한이 외자유치관련 법령정비를 통한 법·제도적 측면의 투자환경 개선에도 불

85) 朝鮮日報, 1993년 2월 9일 2면 참조.

86) 諸成鎬, *supra* note 6, p. 19; 內外通信, *supra* note 6, pp. A3~A4 참조.

구하고, 정치·사회체제의 경직성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서방기업의 대북투자가 短期間內에 증대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⁸⁷⁾ 따라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외경제개방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려면 먼저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법제도의 경직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中國과 비교할 경우 아직도 북한의 법령들에는 相對的으로 未備點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外國人投資法制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① 外國人企業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 設立 制限, ② 북한측의 합작기업 경영 전담, ③ 僱傭·解僱의 硬直性 등 아직까지 북한의 法制度的 側面에서의 投資環境은 서방자본유치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서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⁸⁸⁾ 뿐만 아니라 북한의 政治·社會的 環境이나 資源·內需市場 規模 등에서 중국보다 불리한 측면이 많다. 북한의 開放이 중국과 달리 市場經濟化 改革과 함께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限界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의 자율적 경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資源配分이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북한내 물자구입과 판매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短期的으로 외국투자가는 북한보다 오히려 中國을 投資對象國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방국가의 외자유치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외자유치관련 법령정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체제 개혁 및 개방을 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短期的으로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분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海外同胞들의 資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87) 統一院 情報分析室, *supra* note 9, p. 9.

88)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법규 외에도 涉外經濟契約法, 特許法, 商標權, 外國人投資 獎勵規定, 기타 租稅에 관한 規定 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법규외에도 地方政府 次元의 特別法들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정비는 매우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해서는 한국은 물론 일본 및 서방권의 投資誘致와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데, 결국 북한은 이를 위해서 南北經濟交流協力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中·長期的으로 對美·日 關係改善 등 對外政策이 本質的인 轉換을 적극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⁸⁹⁾

2. 政府와 企業에 대한 提言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전망을 기초로 하여 協力事業, 주로 投資에 의한 北韓進出時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이 각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기로 한다.⁹⁰⁾ 먼저 對北投資時 政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기업의 대북투자를 支援하여야 한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기업들의 대북거래 창구에 북한의 상사나 기업소가 될 것이나 分權化되어 있지 않은 북한경제체제의 특성상 事實上의 窓口는 북한의 中央政府가 될 것이다. 협상의 파트너가 우리의 민간기업과 북한의 정부가 될 경우, 多元化된 窓口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一元化된 窓口를 가지고 있는 북한간에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북협상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에는 法보다는 黨의 方針이 우선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법 자체의 실행여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투자협력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현실적으로 법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투자 보호의 차원에서 북한당국에 대해 외자유치관련 법령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당국이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령의 具體性과 透明度를 제고하도록 촉구

89) 統一院 教育弘報局, *supra* note 4, p. 24.

90) 이하에서는 裴鍾烈, *supra* note 15, pp.34~37 및 裴鍾烈, *supra* note 51, pp.37~40를 많이 참조하였다.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업들의 대북협상을 제고하는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만동포의 대중국투자시 優待措置를 명시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에 비해 우리기업을 우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제정된 법령의 개정을 북한측에 요구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優待措置를 포함하는 特例法을 제정,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적용하도록 북한당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시장을 선점하겠다는 長期的인 投資戰略下에서 초기 대북진출에서 발생하는 損失을 과소평가하고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불완전한 계약은 북한과의 투자협력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 증대 및 북한개방의 지연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標準合作契約書 締結指針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현단계에서는 합영이나 단독투자방식에 의한 북한진출이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나진·선봉지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구상과 관련하여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나진·선봉지역은 개발잠재력은 크나, 관련법령의 미비, 교통·통신시설 등 下部構造 부족으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일·북한 수교시 배상자금과 관련된 일본자본의 진출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이 지역의 개발은 북한, 중국, 소련간의 의견조정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단계에서 실현가능한 대북투자는 합작방식에 의한 북한으로의 진출이라고 판단된다. 합작방식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임가공방식을 포함하므로 제한적으로 범위내에서 기존의 교역구조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합작에 의한 임가공방식의 경우, ① 설비의 낙후, ② 물적유통시스템의 미비, ③ 제품판로의 확보, ④ 경영참여 제한, ⑤ 계약불이행에 대한 대책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다섯째, 북한의 개방의도와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북투자의 초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즉 대북투자에 따른 진출기업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북한 물자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한 政府次元의 法制度的 支援이 요구된다. 그러한 지원방안으로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對北投資保險制度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企業次元의 투자손실을 補填하는 方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최대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정부가 채택해야 할 원칙은 ① 지원방식에 있어서 가능한 한 政治的 判斷이 배제되어야 하고, ② 대북투자지원이나 손실보전의 정도와 규모는 북한의 개방과 투자조건의 개선과 연계되어야 하며, ③ 지원방식이나 손실보전의 정도가 매력적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간 過當競爭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는 北韓進出戰略으로서 다음과 같은 段階的 投資戰略을 수립, 기업들의 투자를 지도·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의 개방추세에 맞추어 직교역→임가공형의 합작→소규모의 합영→소규모 단독투자→인프라건설과 병행된 대규모 합영→대규모 단독투자 등 順次的으로 투자협력을 확대하며, 이에 맞추어 정부가 對北投資支援이나 損失補填對策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¹⁾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 있어서 法的·制度的 裝置가 필수적이다. 즉 남북한 쌍방의 기업들이 상호 투자 등 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는 구체적으로 契約이나 協定 등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구현된다. 대북투자도 이와

91) 현실적인 면에서 대북투자위험은 북한진출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인 바, 정부는 북한측 계약불이행에 의해 야기된 손실보전대책 외에도 1) 위험소지가 큰 합작투자에 대한 사전조정, 2) 물적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對北 陸路시스템의 확보, 3) 구체성이나 투명도가 높은 계약법 제정 촉구와 대북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작표준계약서의 지침 설정 등을 강구해야 한다.

같은 문서에 의해 보호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南北投資保障協定の 締結이 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담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북투자보호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 협정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특수성, 역사적 상황, 해외동포의 역할 등의 면에서 중국이나 독일 등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分斷國들의 선례는 남북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모든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것은 남북한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대북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의 특성 또는 투자분쟁의 유형에 따른 해결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유형별 처리는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國際慣行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대북투자관련 분쟁발생시 합작투자계획 당사자간의 분쟁, 우리측 투자가와 북한당국과의 분쟁 및 정부당국간 분쟁을 나누어 접근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남북투자보장협정에 명문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投資紛爭解決指針을 제정하여 기업 등 우리측 투자자들의 투자분쟁해결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등 투자자들은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투자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북한진출기업의 경우, 당분간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그대로 신뢰하고 대북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북한의 법제도와 현실이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대북투자를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서는 대북투자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앞으로 기업들의 대북투자에 있어서 심도 있는 事前 妥當性調査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勞賃이 저렴하다는 점을 의식하여 성급히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경영상 많은 애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은 중국보다 政府의 統制가 심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한 투자비용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에서는

經濟理論 보다는 金日成 主體思想의 論理가 우선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비용보다도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속에 숨어 있는 비용이 중국보다 높을 것이다. 북한의 外債難도 심각한 상황이므로 決濟方式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수준이 현재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段階的인 北韓進出戰略에 맞추어 順次的으로 대북투자를 추진하여야 한다. 즉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單純 貨加工에서 設備提供型 貨加工으로, 그리고 合作을 통한 貨加工으로 점차 교역구조 개선과 투자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합영과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획득 또는 본격적인 북한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示範事業 내지 小規模 投資를 위주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에서의 子會社 운영을 통한 투자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종의 노우하우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상대적으로 법의 구체성이나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대북투자시 契約締結方式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명목상 互惠平等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는 恣意的 適用의 여지가 있고, 북한 내부정세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은 물론 관련 법령도 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분명히 규정한다는 자세로 북한진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대북투자 初期에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체결하는 계약유형이 앞으로 본격화될 대북투자의 準據契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國際的 基準에 입각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우리 기업들은 북한과의 합작·합영에 있어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國內로 搬入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제품을 미국시장 등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美國의 對敵 國通商規制法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적용될 경우 대북투자의 결과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결국 남북합

작투자전략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행 美國法體系下에서는 북한상품의 對美輸出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남북합작상품의 원산지가 북한으로 판명될 경우 差別關稅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제한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關係改善에 따라 해결될 사안이지만, 그 전에 남북합작상품이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과의 불필요한 通商摩擦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⁹²⁾ 이것은 기업의 고려사항일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外交的 努力이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92) 諸成鎬, “通商法에 비추어 본 南北經濟交流,” 國際去來法學會 發表論文, 1993.4.12, pp.1~35 참조.

북한 법제상으로 본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허 근

북한 법제상으로 본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가능성

허 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북한의 비교열위 부문 |
| II.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 3. 실질적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
| 1. 합작기업과 합영기업 | IV. 결론 및 경제교류 가능성 |
| 2. 자유경제무역지대 | 1. 임가공사업 |
| 3. 외국인투자 유치의 한계 | 2. 자유경제무역지대투자 |
| III. 북한, 중국, 베트남의 투자 인센티브제도 비교 | |
| 1. 북한의 비교우위부문 | |

I. 머리말

남북한 경제교류가 시작된지 햇수로는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교류로 인해 가시적으로는 3억달러의 교역규모, 폐쇄된 북한의 경제사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부분적으로나마 제공받았고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경제교류의 역할을 심각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도 84년 9월 합영법을 도입한 이래, 92년 10월의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93년 1월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

화관리법 등을 제정, 공포하였다. 또한 91년 12월에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교역규모의 증가와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교류는 상당히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핵문제등 남북과 주변국가에 관련된 제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과연 북한과의 체계적인 경제교류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발표한 투자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제 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찾고자 하며 이를 중국 및 베트남의 투자여건과 비교해 보았다. 현단계에서 북한의 투자환경을 중국과 베트남과 비교하는데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중국 발전의 시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이전에서 비롯되었으며 베트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개방을 한다면 아시아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북한으로 대거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베트남·북한의 투자환경비교의 의미를 찾고 싶다.

우선 2장에서는 북한의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베트남·북한을 투자법 자체의 분석과 더불어 몇가지 투자여건에 대한 비교를 하였으며 4장에서는 결론으로 경제교류가 가능한 2가지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진출방안을 언급하였다.

II. 北韓의 外國人投資 誘致 戰略

북한경제체제의 기본 골격은 政經不可分의 原則하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이며 계획경제의 관리를 위해서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주지하는바와 같이 자체의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경제를 운용한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결론은 이러한 노력이 북한정책의 획기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함께 생산의 낙후, 원유난의 심각화로 경

제의 자력갱생은 절대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외국인 투자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합작법 및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는 단지 중국의 특구정책을 모방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시장 개방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合作企業과 合營企業

북한은 외국인 투자법 제2,3조에서 “외국투자가 및 공화국영역밖의 조선동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 형태의 기업 가운데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는 양 기업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조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의 가장 큰 법적 차이점은 경영권과 이윤분배 방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합작기업의 경우 북한의 합작법에서 나타난 합작기업형태는 우리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임가공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경영권은 북한측이 가진다. 상대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외국인투자법 제2조),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향의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합작법13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이윤은 투자된 자본의 회수나 이윤의 분배에 먼저 사용될 수 있다(합작법14조) 등이 그것이다. 이

는 기업을 신설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방식이라 볼 수 있으며 바로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공(PROCESSING DEAL)사업을 위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합영기업은 합작투자(JOINT VENTURE)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투자지분에 따른 경영방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활동을 결산하고 투자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합작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외에도 합작과 합영은 法人형태, 투자형태, 청산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表 1)

〈表 1〉 合作企業과 合營企業의 比較

	合作企業	合營企業
根據法規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및 시행세칙
法人形態	북한의 법인(기존회사도 가능)	북한의 법인(신규회사의 설립)
經營權	북한측이 생산 및 경영	투자지분 및 계약에 따라(이사회)
投資形式	공동투자(지분비가 없음) 건별계약, 생산품이 중요	공동투자(투자액/지분비 동일) 회사설립이 중요
承認處理期間	신청후 50일	규정없음
利潤分配	합작제품 배분원칙	지분비에 따라 배분
清算	북한측으로 모든 소유권이 넘어감	유한책임, 투자비율에 따라 청산

자료 : 朝鮮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合營法 全文을 이용하여 작성

2. 自由經濟貿易地帶

북한은 지난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로 총면적 621km²의 羅津-先鋒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이후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사절단이 동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주관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물론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립함으

로써 UNDP개발계획과 동조해 가고 있지만 두만강개발계획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목적을 가진 것임에 반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이 독자적인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93년 1월 31일에는 동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규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법제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 지역에서 가능한 기업형태는 합작, 합영은 물론 100%외국인투자기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무역항, 즉 나진, 선봉항은 무사증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중국의 특구에 비교할 수 있는 세제 및 각종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번에 발표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특징을 보면 첫째, 담당기관을 정부원 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제3조, 제8-16조)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함으로써 북한당국의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내에서 외국인투자유치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하고 있는 대외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성대)는 地帶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승인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하부구조건설사업(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총투자액 2천만원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 승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와 대외경제부서로 구성되며, 地帶의 행정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하부구조 건설부문 2천만원 이하, 기타 1천만원 이하의 규모의 사업심의·승인, 기술인재 양성기금의 조성 및 양성기관의 운영,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조직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성격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나진-선봉 지역에 국한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적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역이 명시되고 있으며, 지역별특성을 감안하여 법규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이 법을 통하여 총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경영방식에 있어 투자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제5조 “地帶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42조 “地帶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제22조 “地帶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가격규제의 부분적인 완화 규정도 있다. 외환거래도 부분적으로 허락되고 있는데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地帶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가 그것이다.

넷째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혜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국을 의식하여 중국에 비해 다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를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제23조 “地帶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地帶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NO VISA)제도를 실시한다.” 등이다. 또한 특혜관세 및 조세감면제도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 면제 규정(제26조)으로는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어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자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나라의 무역화물이다. 기업소득세율의 경우, 중국이 15%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보다 1%낮은 결산이윤의 14%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이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40조 이윤의 재투자시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반환, 하부구조건설부문의 경우 소득세액의 전부 반환,

투자장려부문(조선외국인투자법 제7조)에의 특혜, 제38조 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 임대 및 임대료 인하, 제39조 필요자금의 우선 대부 등 중국에 비해 다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는 하부구조건설부문에 대한 별도조항 및 특혜사항(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9조의 3항, 제12조의 4항, 제37조, 제40조)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 동 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목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外國人投資 誘致의 限界

투자법을 기초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은 체제유지와 경제난 타개라는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다. 북한은 기존체제와 분리운영할 수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모든 형태의 기업 및 경영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반면, 이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는 합작기업의 형태를 선호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즉 자유경제무역지대 이외의 지역에서는 법적으로는 합작기업 및 합영기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작기업인 임가공사업을 강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선, 이번 투자관련법 개정시 그동안 합영법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영법의 개정은 없이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기업 및 합작기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84년 합영법 제정이래 조총련계 일본기업 및 유럽의 기업들이 합영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영법은 전혀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합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둘째는 종래 합영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조총련계 기업들이 최근 합작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래 북한이

합영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그들의 외화획득 수단으로는 합영보다는 합작의 형태가 유리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92년 12월 북경에서 이루어진 국내 기업인들과 김달현 북한 부총리와의 면담중에서 북한은 임가공 사업을 원한다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임가공사업에 있어서도 원부자재 및 설비의 제공은 외국기업이 하고(무역의 방식) 그 대금은 생산된 제품(청산거래)으로 대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외국인 출입 및 상주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즉 합영기업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형태이므로 외국투자자측의 상주가 필수적인 것이나, 현재 북한은 이들에 대해 단기 비자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사실상의 공동경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목적은 북한이 필요한 외화와 생산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투자유치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III. 北韓, 中國, 베트남의 外國人投資 인센티브 制度 比較

기업의 해외투자가 당사국의 정책에 크게 좌우됨은 사실이나 투자결정요인 중에는 정책적인 투자유치제도 외에도 정치·사회·경제적인 여러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북한과 중국 및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투자사례를 통한 신설된 각 법규의 운용예를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각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가운데 세율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투자유치 기간 및 경험상 나타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북한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투자법상에 나타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비

교해 보았다.

- ① 잠재적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측면(조세, 행정, 관세 등 법적적인 면)
- ② 지정학(location)적인 면
- ③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요구수준
- ④ 운영경비(Operating Cost)면
- ⑤ 장기발전 가능성(국내경제, 내수시장, 투자가간의 시너지 효과 등)
- ⑥ 非市場的 外部要因(non-market external risk):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1. 북한의 비교우위부분

의형상으로 볼 때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는 두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잠재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측면 으로서 세율, 조세감면 등이다. 이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북한이 행정체제 및 실질적인 투자환경이 중국 보다는 많이 뒤져 있음을 감안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다. 우선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가 전반적으로 베트남과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중국에 비해서는 낮다. 외국투자기업의 북한내 운영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기업소득세는 일반지역에서 중국이 평균 33%, 베트남이 15-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북한은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도 북한이 14%로 중국의 15%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과 같은 장려부문의 경우 중국이 15%인 반면 북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업소득세는 중국에 비해서

1-8%의 세율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적으로 보아서는 북한이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경우는 특구 이외에 경제기술개발구, 연해경제개발구 등에 대해 제조업은 15-24%, 비제조업은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 특성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사안별로 중국이 유리할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개인소득세는 기준액수로 보면 양국에 비해 북한이 유리하다. 북한이 월 2천북한원(약 950US달러)이하는 면세이고, 소득액에 따라 초과누진세를 4%-20%까지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월 800중국원(약 145US달러)까지 면세이고 5-45%까지 초과누진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트남은 월 300만동(약 253달러)이하 면세, 10-50% 초과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범위를 감안하면 북한이 중국에 비해 불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북한은 1년이상 거주자의 국외소득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은 국외소득 중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조세감면의 기간이 길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북한은 제조업(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치한 경우) 및 장려부문에 대해 3년간 면제이며 다음 2년간은 50%를 감해주는 반면 중국은 지역에 상관없이 제조업과 장려부문에 대해 2년간 면제이며 그 다음, 3년간 50%를 감해주고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하부구조건설부문(사회간접자본)은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은 4년간 면제하며 다음 년간 50%를 감해 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수출기업에 대해 2년간 면제후 계속 50%를 감해주며, 선진기술로 지정되면 2년간 면제후 6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등 부분별로 다양한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할 수도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합작기업(Joint Venture Enterprise)에 한하여 2년 면제, 2년 50%감해주고 있으나, 투자사안별로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지정학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포함하여 투자 결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지리적인 인접성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일본의 동북아 진출 통로로 이용될 수 있

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항구를 이용한 해상수송으로서 접근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항구뿐 아니라 해상수송보다는 훨씬 빠른 육상수송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北方向(North Orientation)육상교역의 중요 요충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일민족, 동일언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해외투자시 겪게 되는 의사소통문제가 해결된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에서 한반도가 차지하게 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북한지역에의 투자는 여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북한의 비교열위부분

북한의 비교열위부분은 사실상 각 법규의 조항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의 법규는 전체적인 틀이 문제가 되고 있지 세부조항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投資事例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법규 자체보다는 그 운용의 묘가 더욱 중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중국 및 베트남에 비해 북한이 가지는 비교열위부분은 법규이외의 부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개국의 외국인투자유인제도 비교를 위해 <表 2>에서 제시한 6가지의 요소 가운데,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요구수준, 운영경비(Operating Cost)면 등 기업경영활동에 당장 필요한 부분은 물론 장기발전 가능성(국내경제, 내수시장, 투자가간의 시너지효과 등), 非市場的 外部要因(non-market external risk)은 대부분 비교열위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비시장적 외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개혁·개방의 의지가 상층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이를 외국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근의 부분적인 개방이 개혁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래의 주체사

상, 자력갱생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장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76년 등소평의 복권이후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개혁·개방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79년에서 92년 9월말까지 투자유치건수 69,027건에 계약액수 82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86년 도이모이 이후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 결과 88년에서 92년말 현재 366건에 30억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도 양국 모두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북한은 84년 9월 합영법을 도입한 이래 92년 5월말현재 160여건에 불과하며, 이것도 총련계기업, 재미교포 등이 투자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문제가 거론되면서 국제적인 고립이 가중되어 투자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11억 인구, 베트남의 6천 8백만 인구에 비해 2천 2백만명에 불과한 시장규모, 설비노후화에 따른 설비대체의 필요성은 강하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의 불비 등으로 장기적 발전가능성에 있어서도 기대를 걸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3국 공히 사회간접자본의 요구수준은 비슷하지만(중국의 개방지역의 경우는 예외)외국기업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자연히 중국 및 베트남으로 향하게 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은 갈수록 낙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기업운영비용도 중국과 베트남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탄력적인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임금의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65~250달러 정도이며, 베트남의 경우는 50달러 전후로 외국기업으로 부터 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북한은 100달러 전후로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다소 높은 상태이다. 그밖에 기업이 투자를 위해 조사되어야 하는 제반 비용들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국기업

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부분적인 개방을 택하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도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우위를 가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중국의 경우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화교상권과 인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방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였고,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천혜의 해상요지로 평가되고 있는 호지민市(舊사이공)를 중심으로 만 투언 수출가공구등을 개발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중국 및 베트남의 개발전략과는 달리 중심지로 부터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2〉 北韓, 中國, 베트남의 外國人投資 誘致現況 比較

	北 韓	中 國	베 트 남
① 潛在的 投資를 誘引할 수 있는 서비스側面(租稅, 行政, 關稅 등 法制的인 面)			
企業所得 稅率	일반지역 25% 자유경제무역지대 14% 투자장려부문 10%	일반지역 33% 경제특구 15% 투자장려부문 15%	일반지역 15%-25% 수출가공구 제조업 10% 서비스 15% 투자장려분야 15%-20%
個人所得 稅率	2천원/월(약 950US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4-20%	800元/月(약 145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5-45%	300萬동/月(약 253달러) 이하 면세 초과누진세 10-50%
關稅	수입면세(합영), 수출용 수입면세(외국인기업)	수출용 수입면세	수출용 수입면세
租稅減免	3년간 면제, 2년간 50%	2년간 면제, 3년간 50%	2년간 면제, 2년간 50%
② 地政學(location)的인 面			
位置	동북아경제권	화남, 화교 경제권	인도차이나 경제권
韓國 과의 關係	同日言語, 同一民族 陸上연결	의사소통문제, 異民族 현재는 海上연결	의사소통문제, 異民族 海上연결
③ 社會간접자본(Infrastructure) 요구수준			

	北 韓	中 國	베 트 남
수송망	도로, 철도 비교적 양호	연안지역은 양호	도로. 철도는 시설낙후 수상운송 중심
전력	원유 및 석탄부족으로 전력난 심각	비교적 양호	시설부족으로 문제
항만	설비노후, 하역능력 부족	비교적 양호	해상운송의 요충지로써 외국기업의 관심대상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別無	활발히 추진중	일부 추진중
④ 運營經費(Operating Cost)面			
雇傭	노동기관을 통합	직접고용가능, 노동계약 기본, 고용서비스회사	직접고용가능, 고용서비스회사 위탁
賃金(외국 인 기업)	평균100달러/월 전후요구	국영기업 임금의 120-150%, 65-250달러	최저임금 30-50달러 자국기업 20-25달러
土地使用	임대기간 최고 50년 양도 및 상속가능	40-70년 양도 가능	최고 50년, 연장가능
賃貸料	未詳	1-60달러/m ²	0.5-25달러/m ²
原資材 購入	국내구입불가능시 수입 국내구입도 국제가격 기준 외화지급	같은조건시 국내구입 국영기업과 동일가격 외화또는 국내화폐지급	국내의무조달비를 없음
⑤ 長期的 發展 可能性			
對外開放 政策	부분적 개방 시도 시장개방의지는 약함	點 → 線 → 面의 개방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가 강함	도이모이(刷新)추진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가 강함
內需市場	인구(91년말):22백만 人當(GNP(91):1038달러	인구(89년 말):11억 (89):394달러	인구(91년말):68백만 (91)약 200달러
外國人 投資	84-92. 5월 말 현재 약 160여 件 투자정체	79-92.9월말 현재 69, 027件, 약 829억 달러 투자급증	88-92년말 현재 366件, 약 30억 달러 투자급증
⑥ 非市場的 外部要因(non-market external risk)			

	北 韓	中 國	베 트 남
政治的 安定性	외형상 안정유지 개혁의지가 없음 김일성 死後 혼란 예상 국제적 고립 가중	안정유지 개혁·개방의지 강함 등소평 死後 혼란예상	안정유지 개혁·개방의지 강함 개혁성과 부진의 경우 혼란 예상
社會的 安定性	경제난 심화로 주민불만 상존 강제적 안정상태	빈부격차의 심화 안정유지	개혁에 대한 관심고조 안정유지

3. 實質的 投資誘致을 위한 政策

이상과 같이 북한의 투자유치노력은 세계면에서 다소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그 이외의 투자여건은 열악하기 때문에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공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투자유치를 할 수 없으며 획기적인 전환이 불가피하고, 북한에의 투자를 염두에 둘 때 항상 지적되듯이 북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지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외국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우선 要素價格 책정시 북한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shadow price기준). 현재 북한은 要素價格 책정에 있어 국제가격기준을 택하고 있다. 이는 투자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방식이 되지만, 투자를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율(exchange rate)의 경우 북한은 무역은행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공정한환율(91년말 현재 2.10원/달러)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북한내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환율(50원-200원/달러 이상)로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노동비용(cost of labour)도 북한은 당국이 일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수준을 북한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유희노동력을 감안하여 농촌지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입 비용(cost of input)도 마찬가지이다. 토지 및 건물임대료의 경우 북한이 실질적으

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만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하여 다른부분은 과감히 포기해야 외국기업의 투자의욕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남한기업이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기업가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투자여건이 열악한 북한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남한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경제특구의 설치, 투자특례 조항 같은 것을 두어 남한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민족적 차원의 고려도 중요하지만 이윤추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은 개방초기에 홍콩 및 대만기업들이 다소의 투자위험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기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적으로 심천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방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법규 제정보다는 기업운영의 실질적 편리를 제공하는 특혜조치를 별도로 가져갔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폐쇄되어 온 중국이 실제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중국에 투자하여 성공할 수 있을런지 등에 대한 외국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같은 민족인 남한기업도 투자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투자하느냐”는 말을 하고 있다. 이를 전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새겨 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IV. 結論 및 經濟交流 可能性

1. 貨加工事業

현단계에서 우리기업이 취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은 위탁가공사업에 한정된다. 즉 북한이 말하는 합작기업의 형태이다. 우리기업은 남북교역 확대차원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설비를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북한의 위탁가공비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미 우리기업들 중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

거나 하려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북한에 일정수준의 생산설비만 공급이 된다면 노동집약적인 사업 즉 섬유 임가공(봉제, 의류, 신발 등 포함), 자원을 이용한 사업(철강생산 및 수산물 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북한이 제시하는 어떠한 지역이라도 사업성이 맞으면 가능할 것이다. 우리기업들도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로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들이 중국, ASEAN등지로 진출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을 우회수출 기지화하는 것은 북한의 對美·日 관계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한편 합영기업의 경우도 굳이 필요하다면 홍콩에 架空合社(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일본기업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편법이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총련계기업들의 예에서와 같이 당초 합영기업의 형태로 추진하다 합작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업은 합영의 형식을 취하여 기업결산, 이사회 등 제반 법률적인 사항은 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합작의 방식이 일반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과의 위탁가공 계약시 유의사항이 될 수 있는데 계약서상에 합작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탁가공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우리기업들의 기본원칙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규모 사업보다는 추진가능한 사업 및 품목부터 차분히 추진하되, 설비제공은 되도록 우리제품으로 해야 하며, 위탁가공사업을 통해 파악된 북한의 경제현실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설비를 교체하고 북한경제의 실상을 분석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는 것이다.

2. 自由經濟貿易地帶 投資

위탁가공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첫째, 폐쇄의 대명사인 북한이 최초로 개방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북한경제의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에서 가장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지역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모두 저개발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동일 언어권에 속하는 같은 민족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이 나진, 선봉, 청진항 등을 통해 물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문제를 한반도내에서만 풀려는 노력에서 탈피하여 보다 광범위한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단계에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의 유망투자분야로는 물류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들 지역과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진, 선봉, 청진항 등을 통하여 나가도록 함으로써 동지역의 물동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를 바탕으로 일정의 사업규모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제조업부분의 진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